

# 시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781호

2019년 11월 04일 월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훈 령

- 인천광역시훈령 제1200호 인천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 3

##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40호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 고시 ..... 5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4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7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44호 동춘2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9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4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65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48호 도시계획시설(청솔근린공원) 실시계획(최초) 인가 고시 ..... 71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5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영종 A8BL) ..... 81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5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송도 B2BL) ..... 82

##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809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 8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817호 도시계획시설(도로명: 광로3류9호선, 대로1류11호선, 사업명 : 석남 혁신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도로 확장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8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81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 8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82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 8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821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공사완료 공고 ..... 8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823호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 8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829호 인천광역시 수봉문화회관 민간위탁 법인(단체) 모집 공고 ..... 9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831호 인천광역시 국악회관 민간위탁 법인(단체) 모집 공고 ..... 10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832호 문학시어터 민간위탁 운영 법인(단체) 모집 공고 ..... 10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834호 시립체육시설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 109

회 람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836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 11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838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11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839호 국제물류주산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행정처분 공고 ..... 117

###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85호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9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86호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24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9-294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34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9-295호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46

### 군 · 구

- 인천광역시웅진군고시 제2019-139호 대·소이작항 어촌뉴딜300사업 사업계획 고시 ..... 164

###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345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166
- 인천청선학교공고 제2019-49호 공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 167

훈 령

인천광역시훈령(발령)

□ 제 명 : 인천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서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맞춰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함(제7조제1항)
  - 녹지정책과장, 공원조성과장(추가)
  - 도시계획과장 → 도시균형계획과장(변경)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원녹지과장(삭제)

인천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훈령 제 1200 호

인천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정보화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하고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균형계획과장”으로 하며, “공원녹지과장”을 “녹지정책과장, 공원조성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40호

##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 고시

1. 「인천 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을 수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고, 동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인천 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은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전화 : 032-720-2122,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225(도화동))에 비치하고 시민에게 보입니다.

2019. 11. 4.

## 인 천 광 역 시 장

□ 기승인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주요지표 비교

구 분	기승인 수도정비(2015. 02)				부분변경 수도정비(2019. 10)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계획인구(천인)	3,023	3,191	3,319	3,396	3,023	3,191	3,319	3,396	
급수보급율(%)	99.3	99.5	99.5	99.5	99.3	99.5	99.5	99.6	
계획급수인구(천인)	3,001	3,175	3,303	3,381	3,001	3,175	3,305	3,382	
사용량원단위(Lpcd)	295	292	291	289	295	292	291	289	
계획유수율(%)	90.5	93.5	94.0	94.0	90.5	93.5	94.0	94.0	
첨두부하율	구 지역	1.20				1.20			
	도서지역	1.40				1.40			
급수량원단위(Lpcd)	일 평균	326	312	310	307	326	312	310	307
	일 최대	393	377	372	370	393	377	372	370
생활용수수요량(천m <sup>3</sup> /일)	일 평균	980	994	1,023	1,038	980	994	1,023	1,038
	일 최대	1,179	1,196	1,230	1,249	1,179	1,196	1,231	1,250
공업용수(천m <sup>3</sup> /일)	-	20	38	74	82	20	38	74	82
기타용수(천m <sup>3</sup> /일)	-	14	59	64	70	14	59	64	70
일 최대 수요량총괄(천m <sup>3</sup> /일)	합 계	1,213	1,293	1,368	1,401	1,213	1,293	1,369	1,402
	생활용수	1,179	1,196	1,230	1,249	1,179	1,196	1,231	1,250
	공업용수	20	38	74	82	20	38	74	82
	기타용수	14	59	64	70	14	59	64	70

※ 수도정비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032-720-21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또한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상수도정보-수도정비기본계획)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수도시설 확충 계획(변경)

- (지방상수도)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등 4개 도서에 해저관로 등을 이용한 지방상수도 공급
- (도서지역 용수공급) 운반제한급수 실시지역 및 취수원부족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해수담수화시설 설치(14개)

□ 재원투자계획(변경)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비 고
계		-	-	50,551	-	
시 화 계	신·시·모도, 장봉도	-	-	21,535	-	
	해수담수화	-	-	29,016	-	

\* 금회 부분변경 내용만 기술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43호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13), 연수구청(도시계획과, ☎032-749-865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11. 4.

### 인 천 광 역 시 장

####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 2. 위치

- 도시계획시설(공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산61-1번지 일원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1) 공원

#####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장미공원	근린공원	연수구 연수동 산61-1번지 일원	102,443	102	102,545	2013. 6.24. (인고제2013-98호)	-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장미공원	○ 면적변경 - 면적: 증)102m <sup>2</sup>	○ 지적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경미한 변경

###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44호

## 동춘2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동춘2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도시개발법」 제4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 11. 4.

### 인천광역시장

#### I.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없음)

- 명칭: 동춘2구역 도시개발구역

#####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210 (봉재산로 8) 일원
- 면적 : 228,944.7㎡

###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 없음)

불량·노후주택의 정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공공시설의 확보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공공복리의 증진과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없음)

- 성명: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김진학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141(연수3동 577-5, 인천수협본점 6층)

###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없음)

- 시행기간 (변경 없음)  
2009년 4월 6일 ~ 2019년 12월 31일
- 시행방법: 환지방식 (변경 없음)

###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없음)

구 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	
총 계		228,944.7	100.0	
주거 용지	소 계	153,762.1	67.2	
	단독주택	21,218.2	9.3	
	공동 주택	계	128,390.2	56.1
		1BL	90,480.3	39.5
		2BL	6,436.5	2.8
		3BL	18,325.8	8.0
		4BL	13,147.6	5.7
	근린생활시설	4,153.7	1.8	

구 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60,294.7	26.3
	주차장	1,762.5	0.8
	도 로	22,364.6	9.7
	공 원	25,012.2	10.9
	근린공원	21,354.8	9.3
	어린이공원	3,181.7	1.4
	소공원	475.7	0.2
	녹 지	10,227.7	4.5
저류시설	927.7	0.4	
기타 용지	소 계	14,887.9	6.5
	종교시설	11,585.9	5.1
	공공용시설	2,876.0	1.2
	업무시설	426.0	0.2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7호의2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 없음)

: “별첨1” 참조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별첨3” 참조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변경 없음)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6개월 연장 가능)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계획과, ☎ 032-440-4655)  
연수구청(도시계획과, ☎ 032-749-8662)
- 열람내용: 개발계획 수립(변경)
-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별첨2” 참조

## II. 실시계획인가 변경에 관한 사항

###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 명칭: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 2.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불량·노후주택의 정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공공 시설의 확보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공공복리의 증진과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봉재산로 8(동춘동 210) 일원
- 면적 : 228,944.7㎡

### 4. 시행자 (변경 없음)

- 성명: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김진학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141(연수3동 577-5, 인천수협본점 6층)

### 5. 시행기간 (변경없음)

- 2009년 4월 6일 ~ 2019년 12월 31일

### 6. 시행방식 (변경없음)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변경)**

: “별첨2” 참조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계획과, ☎ 032-440-4655)  
연수구청(도시계획과, ☎ 032-749-8662)
- 공람내용: 실시계획(변경) 인가
- 관계도서: 공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9. 법 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변경없음)****10.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 : “별첨4” 참조****11.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 [별첨1]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변경 없음)

번호	동명	지번	지목	면적(m)		소유자		비고
				대장	편입	주소	성명	
	합계	360	필지	230,551.6	230,551.6			
1	동춘동	210	잡	6,510.0	6,51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외 1인	
2	동춘동	210-2	잡	661.0	661.0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8길 70, 3층	하***** 외 1인	
3	동춘동	212	답	812.0	812.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4	동춘동	212-1	구	7.0	7.0	인천 연수구 동춘동 301	이**	
5	동춘동	212-3	대	607.0	607.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6	동춘동	212-4	답	53.0	53.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7	동춘동	214-1	대	584.0	584.0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길83번길3-9	주*****	
8	동춘동	214-2	대	601.0	601.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9	동춘동	214-3	대	349.0	34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0	동춘동	214-4	답	202.0	202.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1	동춘동	214-6	구	50.0	5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2	동춘동	214-7	구	69.0	6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3	동춘동	214-8	구	146.0	146.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4	동춘동	214-14	답	245.0	245.0	충남 아산시 신창면 행목로 152, 106동 1102호(아산대주)	정익상	
15	동춘동	215	잡	1,321.0	1,321.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6	동춘동	215-2	답	123.0	123.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7	동춘동	217-3	대	1.0	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한*****	
18	동춘동	217-4	전	1,227.0	1,227.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9	동춘동	217-8	종	908.0	908.0	인천 연수구 동춘동 217-8	새***	
20	동춘동	217-9	도	22.0	22.0	인천 연수구 동춘동 217-8	새***	
21	동춘동	218	대	17.0	17.0	인천 남동구 구월동 23 힐스테이트 1203-402	김**	
22	동춘동	218-2	대	17.0	17.0	인천 연수구 봉재산로 36번안길 18	왕** 외 1인	
23	동춘동	218-3	대	17.0	17.0	인천 연수구 봉재산로 36번안길 16	왕**	
24	동춘동	218-4	대	41.0	41.0	인천 연수구 봉재산로 36번안길 22	왕**	
25	동춘동	227	대	88.0	88.0	인천 연수구 봉재산로 36번안길 18	왕** 외 1인	
26	동춘동	227-3	도	30.0	30.0	인천 연수구 봉재산로 36번안길 22	왕**	
27	동춘동	227-4	대	88.0	88.0	인천 연수구 봉재산로 36번안길 16	왕**	
28	동춘동	227-5	대	59.0	59.0	인천 남동구 구월동 23 힐스테이트 1203-402	김**	
29	동춘동	227-6	대	59.0	59.0	인천 연수구 봉재산로 36번안길 22	왕**	
30	동춘동	227-7	대	30.0	30.0	인천 남동구 구월동 23 힐스테이트 1203-402	김**	
31	동춘동	228	대	229.0	229.0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84, 19-14	김**	
32	동춘동	228-2	도	14.0	14.0	인천 연수구 봉재산로 36번안길 22	왕**	
33	동춘동	229-2	주	634.0	634.0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84, 19-14	김**	
34	동춘동	229-4	도	36.0	36.0	인천 연수구 봉재산로 36번안길 22	왕**	
35	동춘동	229-5	도	15.0	15.0	인천 남동구 구월동 23 힐스테이트 1203-402	김**	
36	동춘동	229-6	도	15.0	15.0	인천 연수구 봉재산로 36번안길 18	왕** 외 1인	
37	동춘동	229-7	도	15.0	15.0	인천 연수구 봉재산로 36번안길 16	왕**	
38	동춘동	230-1	전	347.0	347.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39	동춘동	230-4	대	5.0	5.0		국(기획재정부)	
40	동춘동	231	대	278.0	278.0		인천광역시 외1인	
41	동춘동	234-1	전	110.0	110.0		인천광역시	
42	동춘동	235-1	대	35.0	35.0		인천광역시	
43	동춘동	238-7	임	7.0	7.0	서울 양천구 신정동 955-3 태성빌라 402호	박**	
44	동춘동	238-15	전	3.0	3.0		인천광역시	
45	동춘동	238-16	임	17.0	17.0		인천광역시	
46	동춘동	239-1	대	605.0	605.0	인천 연수구 동춘동 222-57	이**	
47	동춘동	239-3	전	602.0	602.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번호	동명	지번	지목	면적(m)		소유자		비고
				대장	편입	주소	성명	
48	동춘동	239-12	대	10.0	10.0		인천광역시	
49	동춘동	239-7	전	3.0	3.0		인천광역시	
50	동춘동	239-13	전	14.0	14.0		인천광역시	
51	동춘동	239-14	전	18.0	18.0		인천광역시	
52	동춘동	240	전	347.0	347.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53	동춘동	241	전	545.0	545.0	인천 연수구 동춘동 241	최** 외2인	
54	동춘동	242	대	188.0	188.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55	동춘동	243	전	635.0	63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56	동춘동	243-1	입	1,224.0	1,224.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57	동춘동	244	대	294.0	294.0	인천 연수구 봉재산로 36번안길 12 401호	이** 외 1인	
58	동춘동	245	대	536.0	536.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59	동춘동	246	답	1,199.0	1,19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60	동춘동	246-1	답	993.0	993.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61	동춘동	247	전	436.0	436.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62	동춘동	248-1	잡	506.0	506.0		국(기획재정부)	
63	동춘동	248-2	답	403.0	403.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64	동춘동	248-3	전	846.0	846.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65	동춘동	249	입	32.0	32.0	인천 연수구 봉재산로 36번안길 18	왕** 외 1인	
66	동춘동	249-1	입	32.0	32.0	인천 연수구 봉재산로 36번안길 16	왕**	
67	동춘동	249-2	입	22.0	22.0	인천 남동구 구월동 23 힐스테이트 1203-402	김**	
68	동춘동	249-3	입	22.0	22.0	인천 연수구 봉재산로 36번안길 22	왕**	
69	동춘동	249-4	입	11.0	11.0	인천 남동구 구월동 23 힐스테이트 1203-402	김**	
70	동춘동	250	전	866.0	866.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71	동춘동	251-1	전	664.0	664.0	인천 남구 용현5동 627-78 한양A 6-702	김**	
72	동춘동	251-2	전	545.0	54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73	동춘동	252	답	248.0	248.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74	동춘동	253-1	답	1,276.0	1,276.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75	동춘동	253-2	답	1,768.0	1,768.0	인천 연수구 옥련동 산 85번지	황**	
76	동춘동	254-1	답	932.0	932.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77	동춘동	254-2	답	221.0	221.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78	동춘동	255	전	535.0	53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79	동춘동	255-1	전	397.0	397.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80	동춘동	256	답	1,226.0	1,226.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81	동춘동	257	대	595.0	59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82	동춘동	258-1	대	463.0	463.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83	동춘동	258-2	대	1,078.0	1,078.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84	동춘동	258-3	대	330.0	33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85	동춘동	259	전	572.0	572.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86	동춘동	259-1	전	603.0	603.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87	동춘동	259-2	전	603.0	603.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88	동춘동	259-3	전	468.0	468.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89	동춘동	259-14	전	18.0	18.0		인천광역시	
90	동춘동	259-15	전	109.0	109.0		인천광역시	
91	동춘동	260	전	922.0	922.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92	동춘동	261	전	271.0	271.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93	동춘동	262	대	754.0	754.0	인천 연수구 동춘동 262	김**	
94	동춘동	263-1	전	1,037.0	1,037.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95	동춘동	263-2	대	331.0	331.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96	동춘동	263-3	전	2,129.0	2,12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97	동춘동	263-4	전	61.0	61.0		인천광역시	
98	동춘동	264	전	1,246.0	1,246.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99	동춘동	264-1	전	1,124.0	1,124.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00	동춘동	265-1	전	1,250.0	1,25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번호	동명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대장	편입	주소	성명	
101	동춘동	265-2	전	1,160.0	1,160.0	인천 남구 학익1동 719 동아풍림A 102-1202	이** 외1인	
102	동춘동	265-3	전	1,755.0	1,75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03	동춘동	265-4	대	446.0	446.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04	동춘동	266	대	311.0	311.0	인천 연수구 동춘동 242	이**	
105	동춘동	267-1	전	2,165.0	2,165.0	인천 남구 학익1동 719 동아풍림A 102-1202	이** 외1인	
106	동춘동	267-2	대	245.0	24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07	동춘동	268-1	목	823.0	823.0	인천 남구 학익1동 719 동아풍림A 102-1202	이** 외1인	
108	동춘동	268-2	도	46.0	46.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09	동춘동	268-3	도	33.0	33.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10	동춘동	268-4	대	651.0	651.0	인천 남구 학익1동 719 동아풍림A 102-1202	김** 외2인	
111	동춘동	268-5	도	30.0	30.0	인천 남구 학익1동 719 동아풍림A 102-1202	김**	
112	동춘동	268-6	답	377.0	377.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13	동춘동	268-7	대	357.0	357.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14	동춘동	268-8	전	281.0	281.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15	동춘동	269	대	92.0	92.0	인천 남구 학익1동 719 동아풍림A 102-1202	이**	
116	동춘동	269-1	전	39.0	39.0	인천 남구 학익1동 719 동아풍림A 102-1202	이**	
117	동춘동	269-2	전	130.0	130.0	인천 남구 학익1동 719 동아풍림A 102-1202	김**	
118	동춘동	270-1	전	1,458.0	1,458.0	인천 남구 학익1동 719 동아풍림A 102-1202	이** 외1인	
119	동춘동	270-2	답	231.0	231.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20	동춘동	270-3	도	116.0	116.0	인천 남구 학익1동 719 동아풍림A 102-1202	김**	
121	동춘동	271	답	542.0	542.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22	동춘동	271-1	도	63.0	63.0	인천 연수구 동춘동 283-2	김**	
123	동춘동	271-2	목	416.0	416.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24	동춘동	272-1	구	40.0	4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25	동춘동	272-2	대	410.0	410.0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	이**	
126	동춘동	272-3	전	330.0	33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27	동춘동	272-4	목	238.0	238.0	인천 남동구 선수촌로 56,503동 303회구월동.구월선수촌5단지	이**	
128	동춘동	272-14	목	198.0	198.0	인천 남동구 논현로 106, 608-802(논현동.한화꿈에그린A)	최**	
129	동춘동	272-5	대	353.0	353.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30	동춘동	272-6	도	13.0	13.0	인천 연수구 봉재산로 20 연수서해그랑블1차 108-2303	김**	
131	동춘동	272-7	전	559.0	559.0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	이**	
132	동춘동	272-8	구	69.0	69.0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	이**	
133	동춘동	272-10	전	396.0	396.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34	동춘동	272-11	대	331.0	331.0	인천 남동구 도리미로 8, 104동 1402도림동.도림아이파크	윤**	
135	동춘동	272-12	전	331.0	331.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36	동춘동	272-13	전	593.0	593.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37	동춘동	273	전	1,917.0	1,917.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38	동춘동	273-1	구	16.0	16.0	서울 도봉구 창4동 743-3	정** 외3인	
139	동춘동	274	구	562.0	562.0	서울 강남 개포 660-2 주공A 101-13	정**(사망)	
140	동춘동	274-1	전	825.0	825.0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421 우정A 나-207	조** 외3인	
141	동춘동	274-2	전	527.0	527.0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421 우정A 나-207	조** 외3인	
142	동춘동	275	구	139.0	13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43	동춘동	275-1	전	1,624.0	1,624.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44	동춘동	275-2	구	66.0	66.0	인천 남동구 논현동 732-1 인천논현힐스테이트 101-602	이**	
145	동춘동	275-3	전	836.0	836.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46	동춘동	276	구	172.0	172.0	인천 남동구 논현동 732-1 인천논현힐스테이트 101-602	이**	
147	동춘동	276-1	전	370.0	37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732-1 인천논현힐스테이트 101-602	이**	
148	동춘동	278	구	120.0	120.0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5-230 한강대우트림프월드3차 101-1701호	정** 외1인	
149	동춘동	278-1	전	346.0	346.0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5-230 한강대우트림프월드3차 101-1701호	정** 외1인	
150	동춘동	279	전	288.0	288.0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5-230 한강대우트림프월드3차 101-1701호	정** 외1인	
151	동춘동	280-1	구	327.0	327.0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7길 32, 103동 301호(목동 이편한세상)	손**	
152	동춘동	280-2	구	86.0	86.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53	동춘동	280-3	도	102.0	102.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번호	동명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대장	편입				
154	동춘동	280-4	전	1,597.0	1,597.0	인천 연수구 동춘1동 217-8		강**	
155	동춘동	280-5	전	592.0	592.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56	동춘동	280-6	전	936.0	936.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57	동춘동	281	전	46.0	46.0	인천 연수구 동춘동 325		김**	
158	동춘동	282	전	298.0	298.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59	동춘동	283	도	126.0	126.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60	동춘동	283-1	전	284.0	284.0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7길 32, 103동 301호(목동 이편한세상)		손**	
161	동춘동	283-2	대	877.0	877.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62	동춘동	283-3	대	611.0	611.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63	동춘동	284	대	638.0	638.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64	동춘동	284-1	도	23.0	23.0	인천 남구 용현동 541-7 대진빌라 203호		김**	
165	동춘동	285	대	3,557.0	3,557.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66	동춘동	285-1	전	324.0	324.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67	동춘동	285-2	도	132.0	132.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68	동춘동	285-3	전	1,726.0	1,726.0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53-12		학*****	
169	동춘동	285-4	전	248.0	248.0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53-12		학*****	
170	동춘동	286	전	641.0	641.0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294 3층		(주)지*	
171	동춘동	287	전	2,125.0	2,12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72	동춘동	287-1	대	519.0	51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73	동춘동	287-2	전	392.0	392.0	인천 연수 연수2동 대동A 103동 1306호		안**	
174	동춘동	288	대	350.0	35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75	동춘동	289	대	502.0	502.0	인천 연수구 동춘 289 7/3		정**	
176	동춘동	289-1	전	397.0	397.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77	동춘동	289-2	대	407.0	407.0	인천 연수구 동춘 289 7/3		정**	
178	동춘동	289-3	전	195.0	19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79	동춘동	290	전	132.0	132.0	인천 연수구 동춘 289 7/3		정**	
180	동춘동	291	전	833.0	833.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81	동춘동	292	대	605.0	60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82	동춘동	293	전	390.0	39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83	동춘동	294	전	410.0	41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84	동춘동	295	전	423.0	423.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85	동춘동	295-1	도	36.0	36.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86	동춘동	296	구	50.0	50.0	인천 연수구 해송로30번길 20,402동 1102호(송도동,웰카운터4단지)		오** 외 1인	
187	동춘동	296-1	전	317.0	317.0	인천 연수구 해송로30번길 20,402동 1102호(송도동,웰카운터4단지)		오** 외 1인	
188	동춘동	297	대	46.0	46.0			국(기획재정부)	
189	동춘동	297-1	대	407.0	407.0			국(기획재정부)	
190	동춘동	297-2	구	4.0	4.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191	동춘동	298	전	456.0	456.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92	동춘동	298-1	전	823.0	823.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93	동춘동	299	대	654.0	654.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94	동춘동	299-1	전	417.0	417.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95	동춘동	300	전	248.0	248.0	인천 연수구 봉재산로 44번길 28		유** 외 1인	
196	동춘동	301	대	169.0	16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97	동춘동	301-1	대	356.0	356.0	인천 부평구 갈산동 두산A 102-304		이**	
198	동춘동	301-2	전	1,719.0	1,71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199	동춘동	301-3	대	410.0	41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200	동춘동	301-4	전	892.0	892.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201	동춘동	301-5	대	332.0	332.0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828번길 24-25(주안동)		은** 외 1인	
202	동춘동	302	구	96.0	96.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203	동춘동	302-1	전	513.0	513.0	인천 연수구 봉재산로20, 106-1603(동춘동,연수서해그랑블1단지)		정** 외 1인	
204	동춘동	302-2	대	403.0	403.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205	동춘동	302-3	전	259.0	259.0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길83번길3-9		주*****	
206	동춘동	302-4	전	253.0	253.0	인천 부평구 마장로 121, 308-704(산곡동,현대아파트)		박**	

번호	동명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비고
				대장	편입	주소	성명	
207	동춘동	303	구	377.0	377.0	인천 중구 답동 3(담당:임태영 771-3085)	재*****	
208	동춘동	303-1	전	4,193.0	4,193.0	인천 중구 답동 3(담당:임태영 771-3085)	재*****	
209	동춘동	303-2	전	539.0	53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210	동춘동	303-6	전	313.0	313.0	인천 연수구 연수동 577-5 인천수협본점 6층	동*****	
211	동춘동	304	전	965.0	96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212	동춘동	305-5	답	826.0	826.0	인천 남동구 간석2동 143-13	김**	
213	동춘동	305-6	답	269.0	269.0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8길 70, 3층	하***** 외 2인	
214	동춘동	305-10	전	36.0	36.0	인천 연수구 연수동 543-17 4층	김**	
215	동춘동	305-11	전	241.0	241.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216	동춘동	305-15	답	601.0	601.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217	동춘동	305-16	답	602.0	602.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218	동춘동	305-17	대	121.0	121.0	인천 연수구 동춘동 305-17 (해동크리스탈)	김**	
219	동춘동	305-20	대	705.0	705.0	인천 연수구 동춘동 305-17 (해동크리스탈)	김**	
220	동춘동	305-18	답	268.0	268.0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8길 70, 3층	하***** 외 2인	
221	동춘동	305-19	답	435.0	435.0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8길 70, 3층	하***** 외 2인	
222	동춘동	322-4	답	64.0	64.0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한*****	
223	동춘동	323	답	432.0	432.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224	동춘동	323-1	도	89.0	8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225	동춘동	324	대	562.0	562.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226	동춘동	324-1	대	320.0	320.0		국(기획재정부)	
227	동춘동	324-2	전	42.0	42.0		국(기획재정부)	
228	동춘동	325	대	489.0	489.0	인천 남구 송의4동 2-81 25/4	정** 외 2인	
229	동춘동	325-1	전	334.0	334.0	인천 남구 송의4동 2-81 25/4	정** 외 2인	
230	동춘동	325-5	대	1.0	1.0	인천 연수구 연수동 577-5 인천수협본점 6층	동*****	
231	동춘동	325-6	대	100.0	100.0	인천 연수구 연수동 577-5 인천수협본점 6층	동*****	
232	동춘동	325-7	대	33.0	33.0	인천 연수구 봉재산로 68	인*****	
233	동춘동	325-8	대	326.0	326.0	서울 강남구 학동로68길 29, 103동 1601호	정** 외 4인	
234	동춘동	325-9	전	223.0	223.0	서울 강남구 학동로68길 29, 103동 1601호	정** 외 4인	
235	동춘동	326-1	답	12.0	12.0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한*****	
236	동춘동	326-2	유	1.0	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한*****	
237	동춘동	327-2	답	67.0	67.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238	동춘동	344	대	1,006.0	1,006.0	인천 연수구 민우금로63번길 13, 5-608(동춘동,아주아파트)	최** 외 10인	
239	동춘동	344-3	대	503.0	503.0	인천 연수구 옥련동 626 럭키송도아파트 103-102	최** 외 5인	
240	동춘동	344-4	대	494.0	494.0	인천 연수구 동춘동 345-3 산골빌라 101동 101호	최** 외 5인	
241	동춘동	344-5	대	19.0	19.0		인천광역시 연수구	
242	동춘동	344-6	도	9.0	9.0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33조
243	동춘동	344-7	도	20.0	20.0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33조
244	동춘동	344-8	대	70.0	70.0		국(기획재정부)	
245	동춘동	346	도	99.0	99.0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33조
246	동춘동	347	전	118.0	118.0	인천 연수구 연수동 577-5 인천수협본점 6층	동*****	
247	동춘동	347-1	도	3.0	3.0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33조
248	동춘동	347-2	대	9.0	9.0		인천광역시 연수구	
249	동춘동	347-3	도	19.0	19.0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33조
250	동춘동	348-1	대	390.0	390.0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0-1 대우3차A 103-601	신**	
251	동춘동	348-5	대	245.0	245.0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0-1 대우3차A 103-601	신**	
252	동춘동	348-2	유	99.0	99.0	인천 연수구 연수동 577-5 인천수협본점 6층	동*****	
253	동춘동	348-4	도	28.0	28.0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0-1 대우3차A 103-601	신**	
254	동춘동	349	대	207.0	207.0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0-1 대우3차A 103-601	신**	
255	동춘동	349-2	대	383.0	383.0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0-1 대우3차A 103-601	신*	

번호	동명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대장	편입	주소	성명	
256	동춘동	349-3	대	383.0	383.0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0-1 대우3차A 103-601	신**	
257	동춘동	513-1	종	3,048.0	3,048.0	인천 연수구 동춘동 513-1	홍***	
258	동춘동	514-2	전	2,542.0	2,542.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259	동춘동	515-2	유	138.0	138.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260	동춘동	515-5	유	21.0	21.0	인천 연수구 연수동 577-5 인천수협본점 6층	동*****	
261	동춘동	515-7	답	1,392.0	1,392.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262	동춘동	515-8	답	299.0	299.0	인천 연수구 연수동 577-5 인천수협본점 6층	동*****	
263	동춘동	516	전	553.0	553.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264	동춘동	517	전	755.0	75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265	동춘동	517-4	종	388.0	388.0	인천 중구 답동 3	재*****	
266	동춘동	518-1	전	1,197.0	1,197.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267	동춘동	518-2	전	311.0	311.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268	동춘동	519-1	답	370.0	37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269	동춘동	519-2	전	1,021.0	1,021.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270	동춘동	520-1	전	1,658.0	1,658.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271	동춘동	520-2	답	23.0	23.0		인천광역시	
272	동춘동	520-5	도	485.0	485.0		인천광역시	법33조
273	동춘동	520-6	전	47.0	47.0		인천광역시	
274	동춘동	520-7	답	358.0	358.0		인천광역시	법33조
275	동춘동	520-8	임	2,823.0	2,823.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276	동춘동	520-9	대	1,020.0	1,020.0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3 금호타운 107동 502호	정**	
277	동춘동	524	전	38.0	38.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278	동춘동	525	임	13.0	13.0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한*****	
279	동춘동	529	답	459.0	4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280	동춘동	552	답	761.0	761.0	인천 연수구 동춘동 552	정** 외1인	
281	동춘동	553	전	238.0	238.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282	동춘동	554	대	1,107.0	1,107.0	울산 남구 대공원로99번길 25, 201동 901호(옥동.대공원롯데인벤스)	한** 외 6인	
283	동춘동	554-2	도	15.0	15.0	인천 연수구 선학동 402-10 402호	김** 외1인	
284	동춘동	554-3	대	261.0	261.0	울산 남구 대공원로99번길 25, 201동 901호(옥동.대공원롯데인벤스)	한* 외 6인	
285	동춘동	555	대	747.0	747.0	경기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35번길 8-6	(주)에****	
286	동춘동	556	전	1,243.0	1,243.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287	동춘동	557	전	1,301.0	1,301.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288	동춘동	557-1	전	236.0	236.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289	동춘동	558	대	430.0	430.0	인천 연수구 동춘동 938 건영아파트 111동 402	김** 외 1인	
290	동춘동	559-12	임	11,462.0	11,462.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291	동춘동	559-24	임	211.0	211.0	경기 이천시 영창로 90, 103동 405호(관고동.두산A)	심** 외 1인	
292	동춘동	559-35	임	200.0	20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293	동춘동	559-36	임	1,071.0	1,071.0	인천 연수구 연수동 577-5 인천수협본점 6층	동*****	
294	동춘동	857	임	25.0	25.0		국(기획재정부)	
295	동춘동	857-2	대	5.0	5.0		국(기획재정부)	
296	동춘동	857-3	임	6.0	6.0		국(기획재정부)	
297	동춘동	857-4	도	622.0	622.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298	동춘동	857-5	전	44.0	44.0		국(기획재정부)	
299	동춘동	857-6	도	157.0	157.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300	동춘동	857-7	대	6.0	6.0		국(기획재정부)	
301	동춘동	857-8	전	13.0	13.0		국(기획재정부)	
302	동춘동	857-9	대	43.0	43.0		국(기획재정부)	
303	동춘동	857-10	대	17.0	17.0		국(기획재정부)	
304	동춘동	857-11	도	4.0	4.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305	동춘동	857-12	대	15.0	15.0		국(기획재정부)	
306	동춘동	857-13	전	4.0	4.0		국(기획재정부)	

번호	동명	지번	지목	면적(m)		소유자		비고
				대장	편입	주소	성명	
307	동춘동	857-14	대	24.0	24.0		국(기획재정부)	
308	동춘동	857-15	도	21.0	21.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309	동춘동	857-16	전	44.0	44.0		국(기획재정부)	
310	동춘동	857-17	도	99.0	99.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311	동춘동	857-18	대	62.0	62.0		국(기획재정부)	
312	동춘동	857-19	전	16.0	16.0		국(기획재정부)	
313	동춘동	857-20	대	16.0	16.0		국(기획재정부)	
314	동춘동	857-21	도	3.0	3.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315	동춘동	857-22	대	14.0	14.0		국(기획재정부)	
316	동춘동	857-23	도	32.0	32.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317	동춘동	857-24	잡	6.0	6.0		국(기획재정부)	
318	동춘동	857-25	도	15.0	15.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319	동춘동	857-26	대	20.0	20.0		국(기획재정부)	
320	동춘동	857-27	잡	257.0	257.0		국(기획재정부)	
321	동춘동	858	구	429.0	429.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322	동춘동	858-1	구	300.0	300.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323	동춘동	858-2	구	76.0	76.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324	동춘동	858-4	구	82.0	82.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325	동춘동	858-5	전	70.0	70.0		국(기획재정부)	
326	동춘동	858-8	잡	21.0	21.0		국(기획재정부)	
327	동춘동	858-9	잡	37.0	37.0		국(기획재정부)	
328	동춘동	858-10	잡	49.0	49.0		국(기획재정부)	
329	동춘동	858-11	구	132.0	132.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330	동춘동	858-12	전	21.0	21.0		국(기획재정부)	
331	동춘동	858-13	대	85.0	85.0		국(기획재정부)	
332	동춘동	858-14	구	8.0	8.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333	동춘동	858-15	대	10.0	10.0		국(기획재정부)	
334	동춘동	858-16	전	15.0	15.0		국(기획재정부)	
335	동춘동	858-17	구	59.0	59.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336	동춘동	858-18	전	148.0	148.0		국(기획재정부)	
337	동춘동	858-19	잡	104.0	104.0		국(기획재정부)	
338	동춘동	858-20	전	97.0	97.0		국(기획재정부)	
339	동춘동	858-21	대	71.0	71.0		국(기획재정부)	
340	동춘동	858-22	전	39.0	39.0		국(기획재정부)	
341	동춘동	858-23	대	41.0	41.0		국(기획재정부)	
342	동춘동	858-24	대	16.0	16.0		국(기획재정부)	
343	동춘동	858-25	대	30.0	30.0		국(기획재정부)	
344	동춘동	858-26	대	12.0	12.0		국(기획재정부)	
345	동춘동	858-27	대	5.0	5.0		국(기획재정부)	
346	동춘동	858-28	구	3.0	3.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347	동춘동	858-29	전	29.0	29.0		국(기획재정부)	
348	동춘동	858-30	구	119.0	119.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349	동춘동	858-31	대	12.0	12.0		국(기획재정부)	
350	동춘동	858-32	잡	11.0	11.0		국(기획재정부)	
351	동춘동	859	전	108.0	108.0		국(기획재정부)	
352	동춘동	859-1	도	18.0	18.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353	동춘동	859-2	전	117.0	117.0		국(기획재정부)	
354	동춘동	859-3	도	5.0	5.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355	동춘동	859-4	도	10.0	10.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356	동춘동	859-5	도	6.0	6.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357	동춘동	860	대	64.0	64.0		국(기획재정부)	
358	동춘동	860-1	도	24.0	24.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359	동춘동	860-2	대	8.0	8.0		국(기획재정부)	

번호	동명	지번	지목	면적(m)		소유자		비고
				대장	편입	주소	성명	
360	동춘동	860-3	전	6.0	6.0		국(기획재정부)	
361	동춘동	860-4	도	132.0	132.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362	동춘동	860-5	대	11.0	11.0		국(기획재정부)	
363	동춘동	861	도	150.0	150.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364	동춘동	861-2	대	4.0	4.0		국(기획재정부)	
365	동춘동	861-3	대	2.0	2.0		국(기획재정부)	
366	동춘동	861-4	대	4.0	4.0		국(기획재정부)	
367	동춘동	861-5	대	13.0	13.0		국(기획재정부)	
368	동춘동	861-6	대	39.0	39.0		국(기획재정부)	
369	동춘동	861-7	도	3.0	3.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370	동춘동	868-1	천	60.0	60.0		인천광역시	법33조
371	동춘동	868-2	임	34.0	34.0		국(기획재정부)	
372	동춘동	868-4	천	64.0	64.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373	동춘동	868-6	천	15.0	15.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374	동춘동	868-11	잡	180.0	180.0		국(기획재정부)	
375	동춘동	868-12	전	9.0	9.0		인천광역시	
376	동춘동	868-13	답	15.0	15.0		인천광역시	
377	동춘동	868-14	대	122.0	122.0		국(기획재정부)	
378	동춘동	868-15	천	28.0	28.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379	동춘동	868-16	천	344.0	344.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380	동춘동	868-17	도	372.0	372.0	인천 연수구 연수동 577-5 인천수협본점 6층	동*****	
381	동춘동	868-18	대	11.0	11.0		국(기획재정부)	
382	동춘동	870	전	20.0	20.0		국(기획재정부)	
383	동춘동	870-1	도	29.0	29.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384	동춘동	870-5	도	66.0	66.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385	동춘동	870-6	대	11.0	11.0		국(기획재정부)	
386	동춘동	881	전	140.0	140.0		국(기획재정부)	
387	동춘동	882	도	12.0	12.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388	동춘동	882-2	대	4.0	4.0		국(기획재정부)	
389	동춘동	884	도	8.0	8.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390	동춘동	884-1	대	18.0	18.0		국(기획재정부)	
391	동춘동	884-2	도	110.0	110.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392	동춘동	897	도	16.0	16.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393	동춘동	897-1	대	10.0	10.0		국(기획재정부)	
394	동춘동	898-2	전	60.0	60.0		국(기획재정부)	
395	동춘동	898-3	대	36.0	36.0		국(기획재정부)	
396	동춘동	898-4	전	11.0	11.0		국(기획재정부)	
397	동춘동	898-5	전	37.0	37.0		국(기획재정부)	
398	동춘동	898-6	대	99.0	99.0		국(기획재정부)	
399	동춘동	898-7	전	145.0	145.0		국(기획재정부)	
400	동춘동	898-8	대	31.0	31.0		국(기획재정부)	
401	동춘동	898-9	도	168.0	168.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402	동춘동	898-10	대	8.0	8.0		국(기획재정부)	
403	동춘동	898-11	전	64.0	64.0		국(기획재정부)	
404	동춘동	898-12	도	7.0	7.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405	동춘동	898-13	전	57.0	57.0		국(기획재정부)	
406	동춘동	898-14	도	38.0	38.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407	동춘동	898-15	전	220.0	220.0		국(기획재정부)	
408	동춘동	898-16	잡	92.0	92.0		국(기획재정부)	
409	동춘동	898-17	도	8.0	8.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410	동춘동	898-18	도	69.0	69.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411	동춘동	898-19	전	11.0	11.0		국(기획재정부)	
412	동춘동	899	전	38.0	38.0		국(기획재정부)	

번호	동명	지번	지목	면적(m)		소유자		비고
				대장	편입	주소	성명	
413	동춘동	899-2	구	23.0	23.0		국(농림수산식품부)	법33조
414	동춘동	899-3	구	5.0	5.0		국(농림수산식품부)	법33조
415	동춘동	899-4	전	48.0	48.0		국(기획재정부)	
416	동춘동	899-5	구	25.0	25.0		국(농림수산식품부)	법33조
417	동춘동	899-6	구	27.0	27.0		국(농림수산식품부)	법33조
418	동춘동	899-7	전	20.0	20.0		국(기획재정부)	
419	동춘동	899-8	전	8.0	8.0		국(기획재정부)	
420	동춘동	899-9	구	95.0	95.0		국(농림수산식품부)	법33조
421	동춘동	899-10	대	52.0	52.0		국(기획재정부)	
422	동춘동	899-11	구	3.0	3.0		국(농림수산식품부)	법33조
423	동춘동	899-12	전	112.0	112.0		국(기획재정부)	
424	동춘동	899-13	구	1,380.0	1,380.0		국(농림수산식품부)	법33조
425	동춘동	899-14	잡	251.0	251.0		국(기획재정부)	
426	동춘동	899-15	전	74.0	74.0		국(기획재정부)	
427	동춘동	899-16	전	11.0	11.0		국(기획재정부)	
428	동춘동	899-17	전	9.0	9.0		국(기획재정부)	
429	동춘동	899-18	구	35.0	35.0		국(농림수산식품부)	법33조
430	동춘동	899-19	잡	43.0	43.0		국(기획재정부)	
431	동춘동	899-20	구	23.0	23.0		국(농림수산식품부)	법33조
432	동춘동	899-21	구	8.0	8.0		국(농림수산식품부)	법33조
433	동춘동	899-22	전	1,064.0	1,064.0		국(기획재정부)	
434	동춘동	899-23	구	14.0	14.0		국(농림수산식품부)	법33조
435	동춘동	899-24	대	141.0	141.0		국(기획재정부)	
436	동춘동	899-25	임	12.0	12.0		국(기획재정부)	
437	동춘동	899-26	전	17.0	17.0		국(기획재정부)	
438	동춘동	899-27	구	117.0	117.0		국(농림수산식품부)	법33조
439	동춘동	899-28	대	71.0	71.0		국(기획재정부)	
440	동춘동	899-29	전	37.0	37.0		국(기획재정부)	
441	동춘동	899-30	구	545.0	545.0		국(농림수산식품부)	법33조
442	동춘동	899-31	전	114.0	114.0		국(기획재정부)	
443	동춘동	899-32	전	16.0	16.0		국(기획재정부)	
444	동춘동	899-33	구	61.0	61.0		국(농림수산식품부)	법33조
445	동춘동	899-34	전	109.0	109.0		국(기획재정부)	
446	동춘동	940-2	총	3,551.9	3,551.9	서울 구로구 오류동 115-1	재*****	
447	동춘동	940-3	총	164.0	164.0	인천 연수구 연수동 577-5 인천수협본점 6층	동*****	
448	동춘동	940-4	총	251.1	251.1	인천 연수구 연수동 577-5 인천수협본점 6층	동*****	
449	동춘동	944-1	잡	49.5	49.5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한*****	
450	동춘동	944-2	잡	13.6	13.6		인천광역시 연수구	
451	동춘동	944-3	잡	23.2	23.2		인천광역시 연수구	
452	동춘동	944-4	잡	1.0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453	동춘동	944-5	잡	31.3	31.3		인천광역시 연수구	
454	동춘동	944-6	임	3.9	3.9		인천광역시 연수구	
455	동춘동	944-7	임	1.2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456	동춘동	944-8	전	297.6	297.6		인천광역시 연수구	
457	동춘동	944-9	잡	87.8	87.8		인천광역시 연수구	
458	동춘동	944-10	대	3.8	3.8		인천광역시 연수구	
459	동춘동	944-11	잡	147.4	147.4		인천광역시 연수구	
460	동춘동	944-12	전	25.2	25.2		인천광역시 연수구	
461	동춘동	944-13	도	25.1	25.1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33조
462	동춘동	944-14	도	27.1	27.1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33조
463	동춘동	944-15	잡	386.4	386.4		인천광역시 연수구	
464	동춘동	944-16	도	3.7	3.7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33조

번호	동명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비고
				대장	편입	주소	성명	
465	동춘동	944-17	대	16.8	16.8		인천광역시 연수구	
466	동춘동	944-18	임	11.7	11.7		인천광역시 연수구	
467	동춘동	944-19	도	15.5	15.5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33조
468	동춘동	944-20	과	128.1	128.1		인천광역시 연수구	
469	동춘동	944-21	임	17.0	17.0		인천광역시 연수구	
470	동춘동	944-22	임	317.8	317.8		인천광역시 연수구	
471	동춘동	944-23	도	93.4	93.4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33조
472	동춘동	944-24	잡	72.6	72.6		인천광역시 연수구	
473	동춘동	944-25	도	13.7	13.7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33조
474	동춘동	947-7	도	247.9	247.9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33조
475	동춘동	947-8	전	42.8	42.8		인천광역시 연수구	
476	동춘동	947-10	잡	87.1	87.1		인천광역시 연수구	
477	동춘동	951	잡	497.4	497.4		인천광역시 연수구	
478	동춘동	산35	임	631.0	631.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479	동춘동	산35-3	임	136.0	136.0		인천광역시	
480	동춘동	산36-8	임	12.0	12.0		인천광역시 외1인	
481	동춘동	산42-14	임	212.0	212.0		인천광역시	
482	동춘동	산42-15	임	1.0	1.0		인천광역시	
483	동춘동	산42-16	임	1,492.0	1,492.0		인천광역시	
484	동춘동	산42-17	임	13.0	13.0		인천광역시	
485	동춘동	산42-18	임	106.0	106.0		인천광역시	
486	동춘동	산42-19	임	182.0	182.0		인천광역시	
487	동춘동	산42-12	임	3,771.0	3,771.0		인천광역시	
488	동춘동	산45-2	임	1,382.0	1,382.0		인천광역시	
489	동춘동	산53-53	구	107.0	107.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490	동춘동	산53-55	구	20.0	20.0		국(국토해양부)	법33조
491	동춘동	산53-56	임	92.0	92.0		국(기획재정부)	
492	동춘동	산53-58	임	6,838.0	6,838.0	인천 연수구 봉재산로 20. 108-2303(동춘동.연수서해그랑블1단지)	김** 외 26인	
493	동춘동	산53-59	임	2,214.0	2,214.0	인천 연수구 봉재산로 20. 108-2303(동춘동.연수서해그랑블1단지)	김** 외 26인	
494	동춘동	산53-60	임	299.0	299.0	인천 연수구 봉재산로 20. 108-2303(동춘동.연수서해그랑블1단지)	김** 외 26인	
495	동춘동	산53-61	임	150.0	150.0	인천 연수구 봉재산로 20. 108-2303(동춘동.연수서해그랑블1단지)	김** 외 26인	
496	동춘동	산54	임	1,884.0	1,884.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497	동춘동	산55-1	임	693.0	693.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498	동춘동	산55-44	임	830.0	830.0	인천 남구 송의동 201-38	이상영	
499	동춘동	산55-45	임	1,131.0	1,131.0	인천 연수구 연수동 577-5 인천수협본점 6층	등*****	
500	동춘동	산55-47	임	1,122.0	1,122.0	인천 연수구 동춘동 산 55-27	등***	
501	동춘동	산55-48	임	108.0	108.0	서울 송파구 가락동 96-1 가락우성아파트 3-805	조** 외 1인	
502	동춘동	산55-49	임	330.0	330.0	인천 연수구 옥련동 537	문**	
503	동춘동	산55-50	임	331.0	331.0	인천 남구 옥련동 537	김** 외 2인	
504	동춘동	산56-1	임	8,543.0	8,543.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505	동춘동	산56-2	임	2,419.0	2,419.0	인천 남구 용현동 308-24	이** 외 3인	
506	동춘동	산56-8	임	479.0	479.0	인천 남구 용현동 308-24	이** 외 4인	
507	동춘동	산56-12	임	2,282.0	2,282.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508	동춘동	산56-13	임	2,894.0	2,894.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509	동춘동	산56-14	임	1,196.0	1,196.0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3 동아아파트 118동 806호	이** 외 3인	
510	동춘동	산58-2	임	1,388.0	1,388.0	인천 남구 관교동 13-8 풀림A 103-1301	신*	
511	동춘동	산58-7	임	9,584.0	9,584.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변영로82번길 39.2층(성곡동)	주*****	
512	동춘동	산58-8	임	362.0	362.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6층(서초동.동익성봉빌딩)	서*****	
513	동춘동	산71-7	임	70.0	70.0		인천광역시	법33조
514	동춘동	산82	임	673.0	673.0		국(기획재정부)	
515	동춘동	산82-1	임	58.0	58.0		국(기획재정부)	

\* 대장면적과 측량면적 오차보정 값 : -1,606.9m<sup>2</sup>  
 \* 토지의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

## [별첨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 ■ 도시개발구역지정(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조서 (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지정(지구단위계획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동춘2 도시개발구역 동춘2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210번지 일원	228,944.7	-	228,944.7	인천광역시고시 제2005-62호 (2005.04.20)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228,944.7	-	228,944.7	100.0	
주	거	203,353.1	-	203,353.1	88.8	
	지					
	역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62,489.8	-	62,489.8	27.3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49,869.6	-	49,869.6	21.8	
	제 3 종 일 반 주 거 지 역	90,993.7	-	90,993.7	39.7	
녹	지	25,591.6	-	25,591.6	11.2	
	지					
	역					
	자 연 녹 지 지 역	25,591.6	-	25,591.6	11.2	

###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해당사항 없음)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노선수	연장(m)	면적(m)	노선수	연장(m)	면적(m)	노선수	연장(m)	면적(m)
합 계	23	17,588 (2,788)	221,379.0 (22,364.6)	8	7,218 (1,586)	209,619.3 (10,604.9)	11	9,958 (790)	7,066.1	4	412	4,693.6
광로	-	2,950 (-)	147,500 (-)	-	-	-	-	2,950 (-)	147,500 (-)	-	-	-
대로	2	14,225 (94)	177,039.6 (1,331.6)	1	5,025 (62)	175,875.0 (167.0)	1	9,200 (32)	1,164.6	-	-	-
중로	3	1,884 (1,215)	30,964.3 (7,657.9)	1	1,556 (887)	26,824.5 (3,518.1)	-	-	-	2	328	4,139.8
소로	18	1,479	13,375.1	6	637	6,919.8	10	758	5,901.5	2	84	553.8

\* ( )는 구역 내 구간

•도로 결정조서

등급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유별	번호	폭(m)								
광로	2	3	50	주간선	2,950 (-)	광로 3-6	광로 3-5	일반도로		건고1986-319 (86.7.21)	구역외
대로	1	9	35~38	주간선	5,025 (62)	광로 2-8	65호 광장	일반도로		건고1976-160 (76.7.8)	0는 구역내간
대로	2	10	30	보조간선	9,200 (32)	-	-	일반도로		인고 97-178 (97.8.6)	0는 구역내간
중로	3	31	12	집산도로	364	대로 3-26	중로 1-185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04.20	구역외
중로	3	186	12	집산도로	164	중로 1-185	중로 1-185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04.20	구역외
중로	3	187	12	집산도로	198	대로 3-26	중로 1-185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04.20	구역외
중로	1	185	20~23	집산도로	1,556 (887)	대로 1-9	대로 2-10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04.20	0는 구역내간
중로	3	188	12	집산도로	243	중로 1-185	경관녹지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04.20	
중로	3	189	12	집산도로	85	중로 1-185	박문초교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04.20	
소로	1	1	10	국지도로	207	중로 1-185	중로 3-188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04.20	
소로	1	2	10	국지도로	105	중로 1-185	소로 1-1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04.20	
소로	1	3	10	국지도로	91	소로 1-1	소로 2-1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04.20	
소로	1	5	10	국지도로	52	중로 1-185	근린공원	일반도로		인고2007-177 2007.08.27	
소로	1	6	10	국지도로	118	소로 1-5	경관녹지	일반도로		인고2007-177 2007.08.27	

등급	규모			가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류별	번호	폭(m)								
소로	1	7	11	국지도로	64	대로 2-10	하수종말 처리장	일반도로		인고2007-177 2007.08.27	
소로	2	1	8	국지도로	231	중로 3-188	소로 1-1	일반도로		인고2006-148 2006.08.28	
소로	2	2	8	국지도로	94	소로 1-1	소로 2-1	일반도로		인고2006-148 2006.08.28	
소로	2	3	8	국지도로	82	소로 1-1	소로 2-4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04.20	
소로	2	4	8	국지도로	71	중로 3-188	소로 1-2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04.20	
소로	2	5	8	국지도로	65	소로 1-1	소로 1-2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04.20	
소로	2	6	8	국지도로	110	소로 1-1	구역계	일반도로		인고2006-148 2006.08.28	
소로	2	7	8	국지도로	50	소로 1-3	소로 2-1	일반도로		인고2006-148 2006.08.28	
소로	2	9	8	특수도로	19	중로 1-185	소로 2-6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2007-177 2007.08.27	
소로	2	10	8	특수도로	21	중로 1-185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2007-177 2007.08.27	
소로	2	11	8	특수도로	15	중로 1-185	소로 1-6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2007-177 2007.08.27	
소로	3	1	6	국지도로	51	중로 1-185	구역계	일반도로		인고2005-62 2005.04.20	
소로	3	2	6	국지도로	33	중로 1-189	종교시설	일반도로		인고2008-13 2008.01.28	

•주차장 결정 조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762.5	-	1,762.5		
1	주차장	동춘동 301-2번지 일원	1,762.5	-	1,762.5	인고2005-62 2005.04.20	

○ 공간시설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5,012.2		25,012.2		
기정	1	동춘1공원	근린공원	동춘동 산55-45번지 일원	10,853.1	-	10,853.1	인고2005-62 2005.04.20	
기정	2	동춘2공원	근린공원	동춘동 산58-2번지 일원	10,501.7	-	10,501.7	인고2005-62 2005.04.20	
기정	3	동춘3공원	어린이공원	동춘동 303번지 일원	1,500.2	-	1,500.2	인고2005-62 2005.04.20	
기정	4	동춘4공원	어린이공원	동춘동 514-2번지 일원	1,681.5	-	1,681.5	인고2005-62 2005.04.20	
기정	5	동춘5공원	소공원	동춘동 944-23번지 일원	475.7	-	475.7	인고2008-13 2008.01.28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227.7		10,227.7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동춘동 산58-7 번지 일원	1,005.7	-	1,005.7	인고2005-62 2005.04.20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동춘동 산45-2 번지 일원	2,882.1	-	2,882.1	인고2006-148 2006.08.28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287 번지 일원	1,041.4	-	1,041.4	인고2006-148 2006.08.28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280-5 번지 일원	1,228.9	-	1,228.9	인고2006-148 2006.08.28	일부 중복결정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230-1 번지 일원	4,069.6	-	4,069.6	인고2007-177 2007.08.27	

○ 방재시설

• 우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27.7		927.7		
기정	1	동춘1저류지	저류시설	동춘동 278-1 번지 일원	513.4	-	513.4	인고2007-177 2007.08.27	일부 중복결정
기정	2	동춘2저류지	저류시설	동춘동 944-8 번지 일원	102.7	-	102.7	인고2007-177 2007.08.27	
기정	3	동춘3저류지	저류시설	동춘동 951 번지 일원	149.5	-	149.5	인고2007-177 2007.08.27	
기정	4	동춘4저류지	저류시설	동춘동 870-1 번지 일원	162.1	-	162.1	인고2007-177 2007.08.27	

※ 저류시설 1 전체면적 685.8㎡ 중 일부 172.4㎡는 녹지 5에 중복결정(중복결정된 면적은 녹지에 포함)

■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 단독주택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면적 (㎡)	
			위치	면적(㎡)	위치	면적(㎡)		
단 독	1	1,826.0	①	240.0	①	240.0	-	
			②	220.1	②	220.1	-	
			③	237.2	③	237.2	-	
			④	220.1	④	220.1	-	
			⑤	220.1	⑤	220.1	-	
			⑥	223.5	⑥	223.5	-	
			⑦	225.1	⑦	225.1	-	
			⑧	239.9	⑧	239.9	-	
			소계	1,826.0	소계	1,826.0	-	
	2	1,621.9	①	230.3	①	230.3	-	
			②	220.2	②	220.2	-	
			③	220.2	③	220.2	-	
			④	220.2	④	220.2	-	
			⑤	240.0	⑤	240.0	-	
			⑥	230.0	⑥	230.0	-	
			⑦	261.0	⑦	261.0	-	
			소계	1,621.9	소계	1,621.9	-	
	3	3,694.3	①	236.8	①	236.8	-	
			②	230.1	②	230.1	-	
			③	230.0	③	230.0	-	
			④	223.0	④	223.0	-	
			⑤	213.1	⑤	213.1	-	
			⑥	203.2	⑥	203.2	-	
			⑦	238.4	⑦	238.4	-	
			⑧	298.0	⑧	298.0	-	
			⑨	202.2	⑨	202.2	-	
			⑩	226.9	⑩	226.9	-	
			⑪	226.9	⑪	226.9	-	
			⑫	214.3	⑫	214.3	-	
			⑬	213.2	⑬	213.2	-	
⑭	200.1	⑭	200.1	-				
⑮	240.0	⑮	240.0	-				
⑯	298.1	⑯	298.1	-				
소계	3,694.3	소계	3,694.3	-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증감면적 (㎡)	
			위치	면적(㎡)	위치	면적(㎡)		
단 독	4	1,458.6	①	454.0	①	454.0	-	
			②	282.4	②	282.4	-	
			③	277.2	③	277.2	-	
			④	222.5	④	222.5	-	
			⑤	222.5	⑤	222.5	-	
			소계	1,458.6	소계	1,458.6	-	
	5	1,191.2	①	1,191.2	①	1,191.2	-	
			소계	1,191.2	소계	1,191.2	-	
	6	1,102.4	①	1,102.4	①	1,102.4	-	
			소계	1,102.4	소계	1,102.4	-	
	7	2,270.1	①	317.3	①	317.3	-	
			②	323.3	②	323.3	-	
			③	314.8	③	314.8	-	
			④	449.6	④	449.6	-	
			⑤	317.3	⑤	317.3	-	
			⑥	211.6	⑥	211.6	-	
			⑦	336.2	⑦	336.2	-	
	소계	2,270.1	소계	2,270.1	-			
	8	1,843.2	①	962.4	①	962.4	-	
			②	484.7	②	484.7	-	
			③	396.1	③	396.1	-	
			소계	1,843.2	소계	1,843.2	-	
	9	2,430.3	①	385.7	①	385.7	-	
			②	385.8	②	385.8	-	
			③	386.2	③	386.2	-	
			④	389.2	④	389.2	-	
			⑤	452.9	⑤	452.9	-	
			⑥	430.5	⑥	430.5	-	
소계			2,430.3	소계	2,430.3	-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증감면적 (㎡)	비고
			기 정		변 경			
			위치	면적(㎡)	위치	면적(㎡)		
단 독	10	2,284.0	①	281.7	①	297.2	증)15.5	인고 제2019- 137호에서 ⑧→①, ⑦→②, ⑥→③, ⑤→④, ④→⑤, ③→⑥, ②→⑦, ①→⑧ 로 면적 오기정정
			②	272.2	②	281.7	증)9.5	
			③	274.7	③	302.0	증)27.3	
			④	272.4	④	302.1	증)29.7	
			⑤	302.1	⑤	272.4	감)29.7	
			⑥	302.0	⑥	274.7	감)27.3	
			⑦	281.7	⑦	272.2	감)9.5	
			⑧	297.2	⑧	281.7	감)15.5	
	소계	2,284.0	소계	2,284.0	-			
	11	1,496.2	①	520.0	①	520.0	-	
			②	527.0	②	527.0	-	
			③	449.2	③	449.2	-	
소계			1,496.2	소계	1,496.2	-		
계			21,218.2		21,218.2	-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증감면적 (㎡)	비고
			기 정		변 경			
			위치	면적(㎡)	위치	면적(㎡)		
공 동	1	90,480.3	①	34,424.1	①	34,424.1	-	
			②	56,056.2	②	56,056.2	-	
			소계	90,480.3	소계	90,480.3	-	
	2	6,436.5	①	6,436.5	①	6,436.5	-	
	3	18,325.8	①	18,325.8	①	18,325.8	-	
4	13,147.6	①	13,147.6	①	13,147.6	-		
총 계		128,390.2		128,390.2		128,390.2	-	

##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기 정		변 경		증감면적 (㎡)		
			위치	면적(㎡)	위치	면적(㎡)			
근 생	1	1,897.9	①	860.0	①	860.0	-		
			②	524.5	②	524.5	-		
			③	513.4	③	513.4	-		
			소계	1,897.9	소계	1,897.9	-		
	2	1,692.8	①	553.8	①	553.8	-		
			②	535.0	②	535.0	-		
			③	541.0	③	541.0	-		
			소계	1,629.8	소계	1,629.8	-		
	3	626.0	-	626.0	-	626.0	-		
			소계	626.0	소계	626.0	-		
	총 계		4,153.7		4,153.7		4,153.7	-	

## -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기 정		변 경		증감면적 (㎡)	
			위치	면적(㎡)	위치	면적(㎡)		
종 교	1	3,507.1	①	3,507.1	①	3,507.1	-	
종 교	2	3,684.8	①	3,684.8	①	3,684.8	-	
종 교	3	4,394.0	①	4,394.0	①	4,394.0	-	
총 계		11,585.9		11,585.9		11,585.9	-	

## -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증감면적 (㎡)	비고
			기 정		변 경			
			위치	면적(㎡)	위치	면적(㎡)		
업 무	1	426.0	①	426.0	①	426.0	-	
총 계		426.0		426.0		426.0	-	

## - 공공용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증감면적 (㎡)	비고
			기 정		변 경			
			위치	면적(㎡)	위치	면적(㎡)		
공공	1	2,876.0	①	2,876.0	①	2,876.0	-	
총 계		2,876.0		2,876.0		2,876.0	-	

##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증감면적 (㎡)	비고
			기 정		변 경			
			위치	면적(㎡)	위치	면적(㎡)		
주차	1	1,762.5	①	1,762.5	①	1,762.5	-	
총 계		1,762.5		1,762.5		1,762.5	-	

## - 공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증감면적 (㎡)	비고
			기 정		변 경			
			위치	면적(㎡)	위치	면적(㎡)		
공 원	1	10,853.1	-	10,853.1	-	10,853.1	-	근린공원
공 원	2	10,501.7	-	10,501.7	-	10,501.7	-	근린공원
공 원	3	1,500.2	-	1,500.2	-	1,500.2	-	어린이공원
공 원	4	1,681.5	-	1,681.5	-	1,681.5	-	어린이공원
공 원	5	475.7	-	475.7	-	475.7	-	소공원
총 계		25,012.2		25,012.2		25,012.2	-	

## - 녹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증감면적 (㎡)	비고
			기 정		변 경			
			위치	면적(㎡)	위치	면적(㎡)		
녹 지	1	1,005.7	-	1,005.7	-	1,005.7	-	
녹 지	2	2,882.1	-	2,882.1	-	2,882.1	-	
녹 지	4	1,041.4	-	1,041.4	-	1,041.4	-	
녹 지	5	1,228.9	-	1,228.9	-	1,228.9	-	
녹 지	6	4,069.6	-	4,069.6	-	4,069.6	-	
총 계		10,227.7		10,227.7		10,227.7	-	

## - 저류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증감면적 (㎡)	비고
			기 정		변 경			
			위치	면적(㎡)	위치	면적(㎡)		
저류시설	1	513.4	-	513.4	-	513.4	-	
저류시설	2	102.7	-	102.7	-	102.7	-	
저류시설	3	149.5	-	149.5	-	149.5	-	
저류시설	4	162.1	-	162.1	-	162.1	-	
총 계		927.7		927.7		927.7	-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단독주택용지(변경)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1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아항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칠담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외) ○ 다만,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함
		불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 이하
	건축한계선	○ 10m 도로변 및 12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배치	○ 건물의 전면을 주도로 방향으로 배치함 ○ 단독주택은 2획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	
	형태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 ○ 건축물의 지붕은 박공지붕 형태를 권장 ○ 경사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8/10 범위 내에서 선택하고, 처마길이는 30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담장 및 대문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며,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 재료 및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설치 -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m이하로 하여야 함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5조 참조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2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아항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외) ○ 다만,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함
		불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 이하
	건축한계선		○ 10m 도로변 및 12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배치		○ 건물의 전면을 주도로 방향으로 배치함 ○ 단독주택은 2획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
	형태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 ○ 건축물의 지붕은 박공지붕 형태를 권장 ○ 경사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8/10 범위 내에서 선택하고, 처마길이는 30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담장 및 대문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며,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 재료 및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설치 -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m이하로 하여야 함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5조 참조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3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아항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외) ○ 다만,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함
		불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 이하
	건축한계선		○ 동측 1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배치		○ 건물의 전면을 주도로 방향으로 배치함 ○ 단독주택은 2획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점포형주택은 전면도로로부터 1m 이상 띄어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이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 ○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
	형태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 ○ 건축물의 지붕은 박공지붕 형태를 권장 ○ 경사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8/10 범위 내에서 선택하고, 처마길이는 30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담장 및 대문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며,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 재료 및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설치 -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m이하로 하여야 함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5조 참조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4	용 도 지 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 도	허 용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아항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외) ○ 다만,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함
		불 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150% 이하
	높 이	최 고 수	○ 4층 이하
	건축한계선		○ 서측 1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배 치		○ 건물의 전면을 주도로 방향으로 배치함 ○ 단독주택은 2획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점포형주택은 전면도로로부터 1m 이상 띄어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이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 ○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
	형 태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 ○ 건축물의 지붕은 박공지붕 형태를 권장 ○ 경사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8/10 범위 내에서 선택하고, 처마길이는 30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담장 및 대문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며,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 재료 및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설치 -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m이하로 하여야 함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5조 참조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5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아항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칠답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외) ○ 종교시설 ○ 다만,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함
		불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 이하
	건축한계선		○ 동측 1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배치		○ 건물의 전면을 주도로 방향으로 배치함 ○ 단독주택은 2획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점포형주택은 전면도로로부터 1m 이상 띄어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 ○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
	형태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 ○ 건축물의 지붕은 박공지붕 형태를 권장 ○ 경사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8/10 범위 내에서 선택하고, 처마길이는 30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담장 및 대문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며,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 재료 및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설치 -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m이하로 하여야 함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5조 참조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6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아항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외) ○ 다만,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함
		불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 이하
	건축한계선		○ 서측 1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배치		○ 건물의 전면을 주도로 방향으로 배치함 ○ 단독주택은 2획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점포형주택은 전면도로로부터 1m 이상 띄어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이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 ○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
	형태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 ○ 건축물의 지붕은 박공지붕 형태를 권장 ○ 경사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8/10 범위 내에서 선택하고, 처마길이는 30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담장 및 대문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며,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 재료 및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설치 -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m이하로 하여야 함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5조 참조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7	용 도 지 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 도	허 용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아항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외) ○ 다만,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함
		불 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150% 이하
	높 이	최 고 층 수	○ 4층 이하
	건 축 한 계 선		○ 2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배 치		○ 건물의 전면을 주도로 방향으로 배치함 ○ 단독주택은 2획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
	형 태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 ○ 건축물의 지붕은 박공지붕 형태를 권장 ○ 경사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8/10 범위 내에서 선택하고, 처마길이는 30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담장 및 대문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며,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 재료 및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설치 -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m이하로 하여야 함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5조 참조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8	용 도 지 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 도	허 용 (변 경)	기 정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아항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외) 다만,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함.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변 경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아항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외) ○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 다만,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은 1층에 한함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불 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200% 이하	
	높 이	최 고 층 수	○ 5층 이하, 다만,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은 4개층 이내로 제한	
	건 축 한 계 선		○ 2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배 치		○ 건물의 전면을 주도로 방향으로 배치함 ○ 단독주택은 2획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	
	형 태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 ○ 건축물의 지붕은 박공지붕 형태를 권장 ○ 경사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8/10 범위 내에서 선택하고, 처마길이는 30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담장 및 대문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며,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 재료 및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설치 -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m이하로 하여야 함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5조 참조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9	용 도 지 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 도	허 용 (변경)	기 정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아항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외) 다만,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함.
			변 경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아항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외) ○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 다만,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은 1층에 한함
		불 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150% 이하	
	높 이	최고층 수	○ 4층 이하	
	건 축 한 계 선		○ 2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배 치		○ 건물의 전면을 주도로 방향으로 배치함 ○ 단독주택은 2획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	
	형 태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 ○ 건축물의 지붕은 박공지붕 형태를 권장 ○ 경사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8/10 범위 내에서 선택하고, 처마길이는 30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담장 및 대문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며,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 재료 및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설치 -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m이하로 하여야 함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5조 참조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10	용 도 지 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 도	허 용 (변 경)	기 정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아항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외) 다만,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함.	
		변 경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아항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외) ○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 다만,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은 1층에 한함	
		불 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150% 이하	
	높 이	최 고 층 수	○ 4층 이하	
	건 축 한 계 선			
	배 치		○ 건물의 전면을 주도로 방향으로 배치함 ○ 단독주택은 2획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점포형주택은 전면도로로부터 1m 이상 띄어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	
	형 태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 ○ 건축물의 지붕은 박공지붕 형태를 권장 ○ 경사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8/10 범위 내에서 선택하고, 처마길이는 30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담장 및 대문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며,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 재료 및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설치 -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m이하로 하여야 함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5조 참조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11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아항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외) ○ 다만,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함
		불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 이하
	건축한계선		○ 11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배치		○ 건물의 전면을 주도로 방향으로 배치함 ○ 단독주택은 2획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
	형태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 ○ 건축물의 지붕은 박공지붕 형태를 권장 ○ 경사지붕으로 조성하는 경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8/10 범위 내에서 선택하고, 처마길이는 30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담장 및 대문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며,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 재료 및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설치 -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m이하로 하여야 함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5조 참조

## - 공동주택용지(변경 없음)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동1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A2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공동주택 ○ A3 : 전용면적 85㎡ 초과인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97% 이하
	높이	최 고 층 수	○ 23층 이하
	건축한계선		○ 5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0m ○ 서측 지구경계 및 단독주택주변 : 건축한계선 10m ○ 2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6m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 건축한계선까지의 공간은 단지 내 조경으로 조성, 다만, 차량 출입구 및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배치		○ 부지동측경계로부터 50m폭은 건축물 직각배치구간 ○ 탑상형 배치 권장 ○ "□", "H", "T", "ㄱ", "ㄷ" 자형 배치를 가급적 지양, 대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개구부 방향을 달리하게 계획 ○ "□", "H", "T", "ㄱ" 자형 등의 배치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이외에 채광창이 없는 부분에서도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8미터 이상 이격하여 개방감이 확보되게 계획
	형태		○ 건축물 1동의 길이 - 판상형의 경우 1동의 길이는 60m 이내 - 탑상형의 경우 5호 조합 이내로 계획 ○ 피로티 구조의 최소높이는 1개층 이상 설치 ○ 공동주택 중 판상형은 2면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하여야 하며, 탑상형의 경우는 파라펫이나 장식물처리로 옥상구조물을 차폐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6조 참조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동2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A1 :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변경	○ 11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6층 이하
	세대수		○ 90세대
	건축한계선		○ 20m 도로변 및 단독주택지변 : 건축한계선 6m ○ 대건고 접경부 : 건축한계선 10m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 건축한계선까지의 공간은 단지 내 조경으로 조성, 다만, 차량출입구 및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배치		○ 부지동측 도로에 접한 구간은 건축물 직각배치구간 ○ 탑상형 배치 권장 ○ "□", "H", "T", "ㄱ", "ㄴ" 자형 배치를 가급적 지양, 대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개구부 방향을 달리하게 계획 ○ "□", "H", "T", "ㄱ" 자형 등의 배치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이외에 채광창이 없는 부분에서도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8미터 이상 이격하여 개방감이 확보되게 계획
	형태		○ 건축물의 입면적은 3,500㎡ 이하로 함 ○ 피로티 구조의 최소높이는 1개층 이상 설치 ○ 공동주택 중 판상형은 2면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하여야 하며, 탑상형의 경우는 파라펫이나 장식물처리로 옥상구조물을 차폐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6조 참조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동3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A2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18층 이하
	세대수		○ 308세대
	건축한계선		○ 3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20m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 건축한계선까지의 공간은 단지 내 조경으로 조성, 다만, 차량출입구 및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배치		○ 탑상형 배치 권장 ○ "□", "H", "T", "ㄱ", "ㄴ" 자형 배치를 가급적 지양, 대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개구부 방향을 달리하게 계획 ○ "□", "H", "T", "ㄱ" 자형 등의 배치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이외에 채광창이 없는 부분에서도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8미터 이상 이격하여 개방감이 확보되게 계획
	형태		○ 건축물의 입면적은 3,500㎡ 이하로 함 ○ 피로티 구조의 최소높이는 1개층 이상 설치 ○ 공동주택 중 판상형은 2면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하여야 하며, 탑상형의 경우는 파라펫이나 장식물처리로 옥상구조물을 차폐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6조 참조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동4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A1 :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15층 이하
	세대수		○ 251세대
	건축한계선		○ 2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6m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 건축한계선까지의 공간은 단지 내 조경으로 조성, 다만, 차량 출입구 및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배치		○ 탑상형 배치 권장 ○ "□", "H", "T", "ㄱ", "ㄷ" 자형 배치를 가급적 지양, 대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개구부 방향을 달리하게 계획 ○ "□", "H", "T", "ㄱ" 자형 등의 배치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이외에 채광창이 없는 부분에서도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8미터 이상 이격하여 개방감이 확보되게 계획
	형태		○ 건축물의 입면적은 3,500㎡ 이하로 함 ○ 피로티 구조의 최소높이는 1개층 이상 설치 ○ 공동주택 중 판상형은 2면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하여야 하며, 탑상형의 경우는 파라펫이나 장식물치리로 옥상구조물을 차폐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6조 참조	

##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근린1, 근린2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
		불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건축한계선		○ 2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배치		○ 접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도로 중 폭이 넓은 도로변을 건축물의 전면방향으로 계획 ○ 전면도로로부터 1m 이상 띄어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
	형태		○ 건축물의 폭이 25m이상일 경우 시각적 분절이 되도록 건축 ○ 건축물 1층 높이는 5m이내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 ○ 경사지붕 및 옥상 파라펫 혹은 장식구조물을 이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담장 및 대문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며,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 재료 및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설치 -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생울타리 등으로 녹지대 형태로 조성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0조 참조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근린3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
		불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 이하
	건축한계선		○ 3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배치		○ 접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도로 중 폭이 넓은 도로변을 건축물의 전면방향으로 계획 ○ 전면도로로부터 1m 이상 띄어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
	형태		○ 건축물의 폭이 25m이상일 경우 시각적 분절이 되도록 건축 ○ 건축물 1층 높이는 5m이내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 ○ 경사지붕 및 옥상 파라펫 혹은 장식구조물을 이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담장 및 대문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며,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 재료 및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설치 -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생울타리 등으로 녹지대 형태로 조성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0조 참조

## - 공공용시설용지(변경없음)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공1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 마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라, 아, 자, 타목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 라목 ○ 노유자시설 중 가목 ○ 교육연구시설
		불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 이하
	건축한계선		
	배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변으로 하여야 함
	형태		○ 공공시설은 지역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 ○ 경관상 단지의 랜드마크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할 것을 권장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재 및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 -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65조 참조

## -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종교1, 종교2, 종교3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4 또는 6에 해당하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중의 종교집회장과 종교시설중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에 한한다. (납골당 제외)
		불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 이하
	건축한계선		○ 2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배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변으로 하여야 함
	형태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재 및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 -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65조 참조

## - 업무시설용지(변경 없음)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업무1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연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중 남인천농협부지에 적용되는 내용을 따른다.
		불허	○ 연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중 남인천농협부지에 적용되는 내용을 따른다.
	건폐율		○ 연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중 남인천농협부지에 적용되는 내용을 따른다.
	용적률		○ 연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중 남인천농협부지에 적용되는 내용을 따른다.
	높이	최고층수	○ 연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중 남인천농협부지에 적용되는 내용을 따른다.
	건축한계선		○ 연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중 남인천농협부지에 적용되는 내용을 따른다.
	배치		○ 연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중 남인천농협부지에 적용되는 내용을 따른다.
	형태		○ 연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중 남인천농협부지에 적용되는 내용을 따른다.
	색채		○ 연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중 남인천농협부지에 적용되는 내용을 따른다.

## - 주차장용지(변경 없음)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주차1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포함)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때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불허	○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20m 이하	○ 4층 이하
	건축한계선			
	배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변으로 하여야 함	
	형태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재 및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 -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65조 참조	

[별첨3]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1. 도로

가. 위치도



나. 설치계획

구 분	A(변경 없음)	비고
위 치	연수구 동춘동 945번지 일원	
변 경 사 유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중로1-185호선 확장	
시 설 내 역	- 도로폭: 15m => 20~23m - 도로연장: 1,556m	
비용부담주체	사업시행자	
사 업 비 용	약 3,000백만원	
사 업 시 기	도시개발사업 기간내	

구 분	B(변경 없음)	비고
위 치	연수구 동춘동 946-3번지 일원	
변 경 사 유	3BL공동주택지 진입로 확장에 의한 완충녹지의 폐지	
시 설 내 역	- 도로폭: 6m => 11m - 도로연장: 50m	
비용부담주체	사업시행자	
사 업 비 용	약 100백만원	
사 업 시 기	도시개발사업 기간내	

구 분	C(변경없음)	비고
위 치	연수구 동춘동 산59-10번지 일원	
변 경 사 유	구역계 제척으로 대로2-10호선 구역 외 시설로 개설	
시 설 내 역	- 도로폭: 30m - 도로연장: 약100m	
비용부담주체	사업시행자	
사 업 비 용	약 1,500백만원	
사 업 시 기	도시개발사업 기간 내	

## 다. 구역 외 설치 토지조서

번호	동명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비고
				대장	설치	주소	성명	
1	동춘동	238-8	전	3.0	3.0		인천광역시	광로2-3
2	동춘동	238-13	임	15.0	15.0		인천광역시	광로2-3
3	동춘동	239-6	대	1.0	1.0		인천광역시	광로2-3
4	동춘동	239-8	전	4.0	4.0		인천광역시	광로2-3
5	동춘동	239-10	전	8.0	8.0		인천광역시	광로2-3
6	동춘동	259-4	전	11.0	11.0		인천광역시	광로2-3
7	동춘동	259-6	전	18.0	18.0		인천광역시	광로2-3
8	동춘동	944	도	11,123.4	11,123.4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로1-185
9	동춘동	960	도	7,648.8	7,648.8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로1-185
10	동춘동	960-2	도	10,728.3	7,774.1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로1-185
11	동춘동	960-3	도	2,906.4	2,906.4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로1-185
12	동춘동	945-1	대	300.3	300.3	옥련동 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	중로1-185
13	동춘동	946-3	잡	1,205.7	206.5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로1-7
14	동춘동	946-4	도	3,110.4	768.3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로1-7
15	동춘동	947-1	잡	36.9	23.8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로1-7
16	동춘동	산35-1	임	45.0	45.0		인천광역시	광로2-3
17	동춘동	산36-7	임	9.0	9.0		인천광역시	광로2-3
	국(기획재정부)							
18	동춘동	산42-6	임	91.0	91.0		인천광역시	광로2-3
19	동춘동	산42-7	임	3.0	3.0		인천광역시	광로2-3
20	동춘동	산42-9	임	20.0	20.0		인천광역시	광로2-3
21	동춘동	산42-10	임	17.0	17.0		인천광역시	광로2-3
22	동춘동	산42-11	임	41.0	41.0		인천광역시	광로2-3
23	동춘동	산59-10	임	3,431.0	3,431.0		인천광역시	대로2-10
합 계				40,777.2	34,050.3			

## 2. 방음터널 설치

### 가.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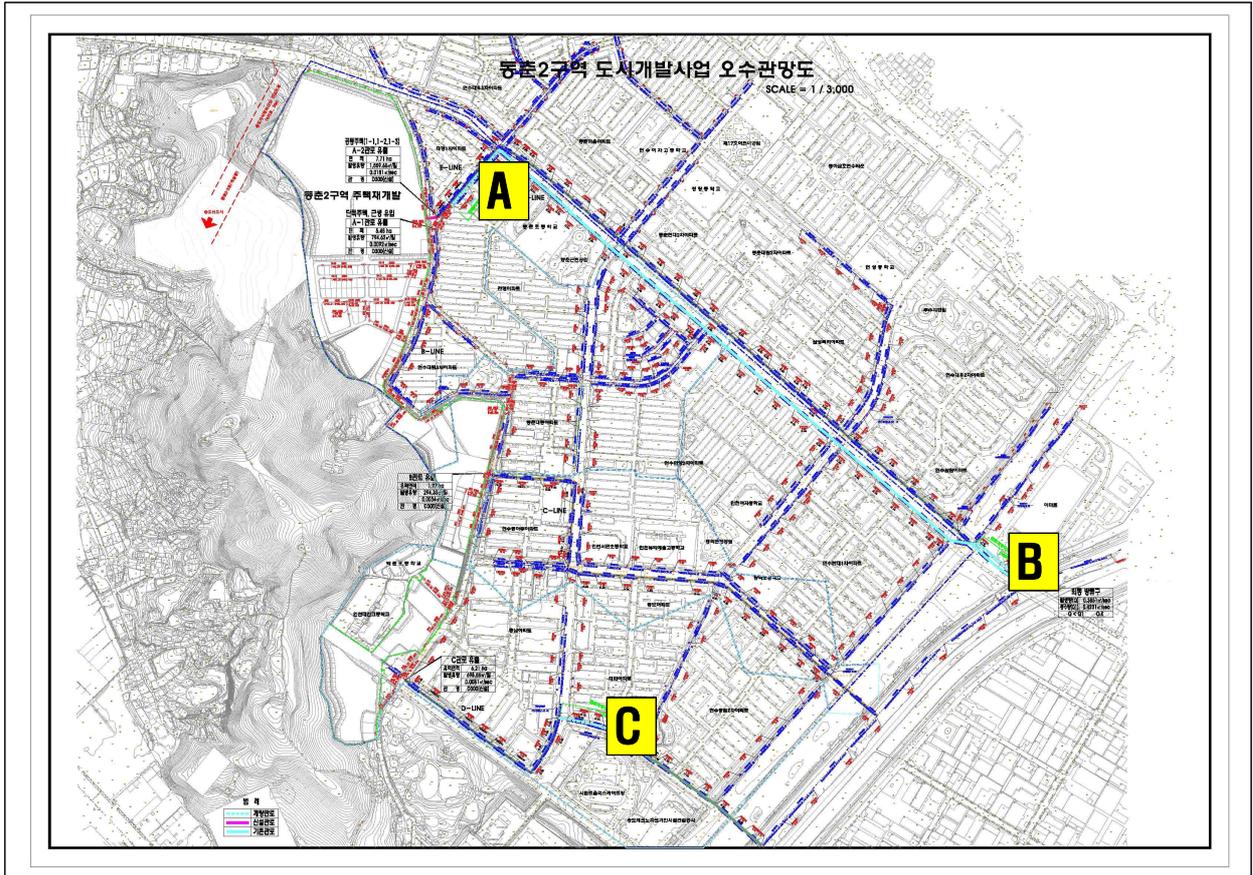


### 나. 일반현황

구 분	방음터널	비 고
위 치	- 연수구 동춘동 259-8번지 일원	
변 경 사 유	-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방음터널 설치	
비용부담주체	- 공동주택 1BL 사업시행자	
사 업 비 용	- 약 6,000백만원	
사 업 시 기	- 도시개발사업 기간내	

### 3. 하수관로 개량공사

#### 가. 위치도



#### 나. 일반현황

구 분	방음터널	비 고
위 치	- 연수구 일원	
변 경 사 유	- 2016년 인천시 하수과 의견에 따라 개량	
시 설 내 역	- A : L = 154m, D250 → D300 - B : L = 144m, D600 → D800 - C : L = 189m, D250 → D300	
비용부담주체	- 공동주택 1BL 사업시행자	
사 업 비 용	- 약 1,200백만원	
사 업 시 기	- 도시개발사업 기간내	

## [별첨4]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

## ■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변경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비고
1	기정	동춘동	297-2	구	4.0	4.0	
2	기정	동춘동	857-4	도	622.0	622.0	
3	기정	동춘동	857-6	도	157.0	157.0	
4	기정	동춘동	857-11	도	4.0	4.0	
5	기정	동춘동	857-15	도	21.0	21.0	
6	기정	동춘동	857-17	도	99.0	99.0	
7	기정	동춘동	857-21	도	3.0	3.0	
8	기정	동춘동	857-23	도	32.0	32.0	
9	기정	동춘동	857-25	도	15.0	15.0	
10	기정	동춘동	858	구	429.0	429.0	
11	기정	동춘동	858-1	구	300.0	300.0	
12	기정	동춘동	858-2	구	76.0	76.0	
13	기정	동춘동	858-4	구	82.0	82.0	
14	기정	동춘동	858-11	구	132.0	132.0	
15	기정	동춘동	858-14	구	8.0	8.0	
16	기정	동춘동	858-17	구	59.0	59.0	
17	기정	동춘동	858-28	구	3.0	3.0	
18	기정	동춘동	858-30	구	119.0	119.0	
19	기정	동춘동	859-1	도	18.0	18.0	
20	기정	동춘동	859-3	도	5.0	5.0	
21	기정	동춘동	859-4	도	10.0	10.0	
22	기정	동춘동	859-5	도	6.0	6.0	
23	기정	동춘동	860-1	도	24.0	24.0	
24	기정	동춘동	860-4	도	132.0	132.0	
25	기정	동춘동	861	도	150.0	150.0	
26	기정	동춘동	861-7	도	3.0	3.0	
27	기정	동춘동	868-4	천	64.0	64.0	
28	기정	동춘동	868-6	천	15.0	15.0	
29	기정	동춘동	868-15	천	28.0	28.0	
30	기정	동춘동	868-16	천	344.0	344.0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비 고
31	기정	동춘동	870-1	도	29.0	29.0	
32	기정	동춘동	870-5	도	66.0	66.0	
33	기정	동춘동	882	도	12.0	12.0	
34	기정	동춘동	884	도	8.0	8.0	
35	기정	동춘동	884-2	도	110.0	110.0	
36	기정	동춘동	897	도	16.0	16.0	
37	기정	동춘동	898-9	도	168.0	168.0	
38	기정	동춘동	898-12	도	7.0	7.0	
39	기정	동춘동	898-14	도	38.0	38.0	
40	기정	동춘동	898-17	도	8.0	8.0	
41	기정	동춘동	898-18	도	69.0	69.0	
42	기정	동춘동	산53-53	구	107.0	107.0	
43	기정	동춘동	산53-55	구	20.0	20.0	
국(국토교통부) 합계					3,622.0	3,622.0	

## - 농림수산식품부(변경 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비 고
1	기정	동춘동	899-2	구	23.0	23.0	
2	기정	동춘동	899-3	구	5.0	5.0	
3	기정	동춘동	899-5	구	25.0	25.0	
4	기정	동춘동	899-6	구	27.0	27.0	
5	기정	동춘동	899-9	구	95.0	95.0	
6	기정	동춘동	899-11	구	3.0	3.0	
7	기정	동춘동	899-13	구	1,380.0	1,380.0	
8	기정	동춘동	899-18	구	35.0	35.0	
9	기정	동춘동	899-20	구	23.0	23.0	
10	기정	동춘동	899-21	구	8.0	8.0	
11	기정	동춘동	899-23	구	14.0	14.0	
12	기정	동춘동	899-27	구	117.0	117.0	
13	기정	동춘동	899-30	구	545.0	545.0	
14	기정	동춘동	899-33	구	61.0	61.0	
국(농림수산식품부) 합계					2,361.0	2,361.0	

## - 인천광역시(변경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비 고
1	변경	동춘동	520-5	도	485.0	485.0	
2	변경	동춘동	520-7	답	358.0	358.0	
3	기정	동춘동	868-1	천	60.0	60.0	
4	변경	동춘동	산71-7	임	70.0	70.0	
인천광역시 합계					973.0	973.0	

## - 인천광역시 연수구(변경 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비 고
1	기정	동춘동	344-6	도	9.0	9.0	
2	기정	동춘동	344-7	도	20.0	20.0	
3	기정	동춘동	346	도	99.0	99.0	
4	기정	동춘동	347-1	도	3.0	3.0	
5	기정	동춘동	347-3	도	19.0	19.0	
6	기정	동춘동	944-13	도	25.1	25.1	
7	기정	동춘동	944-14	도	27.1	27.1	
8	기정	동춘동	944-16	도	3.7	3.7	
9	기정	동춘동	944-19	도	15.5	15.5	
10	기정	동춘동	944-23	도	93.4	93.4	
11	기정	동춘동	944-25	도	13.7	13.7	
12	기정	동춘동	947-7	도	247.9	247.9	
인천광역시 연수구 합계					576.4	576.4	

■ 국가(지자체)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조서

○ 교통시설 (변경없음)

- 도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노선수	연장(m)	면적(m)	노선수	연장(m)	면적(m)	노선수	연장(m)	면적(m)
합 계	23	17,588 (2,788)	221,379.0 (22,364.6)	8	7,218 (1,586)	209,619.3 (10,604.9)	11	9,958 (790)	7,066.1	4	412	4,693.6
광로	-	2,950 (-)	147,500 (-)	-	-	-	-	2,950 (-)	147,500 (-)	-	-	-
대로	2	14,225 (94)	177,039.6 (1,331.6)	1	5,025 (62)	175,875.0 (167.0)	1	9,200 (32)	1,164.6	-	-	-
중로	3	1,884 (1,215)	30,964.3 (7,657.9)	1	1,556 (887)	26,824.5 (3,518.1)	-	-	-	2	328	4,139.8
소로	18	1,479	13,375.1	6	637	6,919.8	10	758	5,901.5	2	84	553.8

○ 공간시설 (변경없음)

- 공원 결정 조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면적 (㎡)	최초 결정일
합 계				25,012.2	
1	동춘1공원	근린공원	동춘동 산55-45번지 일원	10,853.1	인고2005-62 2005.04.20
2	동춘2공원	근린공원	동춘동 산58-2번지 일원	10,501.7	인고2005-62 2005.04.20
3	동춘3공원	어린이공원	동춘동 303번지 일원	1,500.2	인고2005-62 2005.04.20
4	동춘4공원	어린이공원	동춘동 514-2번지 일원	1,681.5	인고2005-62 2005.04.20
5	동춘5공원	소공원	동춘동 944-23번지 일원	475.7	인고2008-13 2008.01.28

## - 녹지 결정 조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10,227.7		
1	녹지	경관녹지	동춘동 산58-7번지 일원	1,005.7	인고2005-62 2005.04.20	
2	녹지	경관녹지	동춘동 산45-2번지 일원	2,882.1	인고2006-148 2006.08.28	
4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287번지 일원	1,041.4	인고2006-148 2006.08.28	
5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280-5번지 일원	1,228.9	인고2006-148 2006.08.28	일부 중복결정
6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230-1번지 일원	4,069.6	인고2007-177 2007.08.27	

## ○ 방재시설 (변경없음)

## - 우수지 결정 조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927.7		
1	동춘1저류지	저류시설	동춘동 278-1번지 일원	513.4	인고2007-177 2007.08.27	일부 중복결정
2	동춘2저류지	저류시설	동춘동 944-8번지 일원	102.7	인고2007-177 2007.08.27	
3	동춘3저류지	저류시설	동춘동 951번지 일원	149.5	인고2007-177 2007.08.27	
4	동춘4저류지	저류시설	동춘동 870-1번지 일원	162.1	인고2007-177 2007.08.27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47호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사업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440-1722), 서구청(도시개발과, ☎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11. 4.

## 인 천 광 역 시 장

### 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결정(변경)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 2.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405번길(원창동 213-1번지 일원)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서구 원창동 213-1번지 일원	435,876	증)450	436,326	1984. 8. 14.	올도

-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면적: 435,876m <sup>2</sup> → 436,326m <sup>2</sup> (증 450m <sup>2</sup> )	• 광3-3호선 도로개설구간과 송유시설 저축에 따른 지중화를 위한 구역경계 변경

##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II.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405번길(원창동 213-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명칭: SK인천정유소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면 적(변경): 기정)435,876㎡→변경)436,326㎡ (증450㎡)
- 규 모(변경없음): 건축연면적: 1,381.1㎡, 공작물면적 66,732.8㎡

##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SK인천석유화학(주) 대표이사 최남규
- 주소: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415(서구 원창동 100번지)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사업기간: 1984. 8. ~ 2020. 12.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따로 붙임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연번	소재지	기정				변경					소유자	비고
		지번	부번	공부면적(m <sup>2</sup> )	편입면적(m <sup>2</sup> )	지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m <sup>2</sup> )	편입면적(m <sup>2</sup> )		
1	원창동	196	4	1,745	1,745	196	4	체	1,745	1,745	국토교통부	
2	원창동	196	7	4,007	4,007	196	7	도	4,007	4,007	국토교통부	
3	원창동	196	9	2,856	2,856	196	9	체	2,856	2,856	국토교통부	
4	원창동	196	10	4,783	4,783	196	10	잡	4,783	4,783	에스**	
5	원창동	196	12	3,375	3,375	196	12	잡	3,375	3,375	기획재정부	
5	원창동	196	13	2,772	797	196	13	도	2,772	797	인천광역시	
7	원창동	196	16	2,026	2,005	196	16	잡	2,026	2,005	에스**	
8	원창동	196	18	2,960	2,960	196	18	잡	2,960	2,960	에스**	
9	원창동	196	19	188	188	196	19	잡	188	188	에스**	
10	원창동	211		422	422	211		잡	422	422	에스**	
11	원창동	211	12	43	43	211	12	잡	43	43	에스**	
12	원창동	211	13	871	871	211	13	잡	871	871	에스**	
13	원창동	211	2	17,217	17,217	211	2	도	17,217	17,217	국토교통부	
14	원창동	211	3	5,897	5,897	211	3	잡	5,897	5,897	에스**	
15	원창동	211	14	412	412	211	14	잡	412	412	에스**	
16	원창동	211	15	1,472	1,472	211	15	잡	1,472	1,472	에스**	
17	원창동	211	4	14,003	14,003	211	4	체	14,003	14,003	국토교통부	
18	원창동	211	5	255	3	211	5	체	255	3	국토교통부	
19	원창동	211	6	2,489	2,489	211	6	도	2,489	2,489	국토교통부	
20	원창동	211	7	126	126	211	7	잡	126	126	에스**	
21	원창동	211	10	205	205	211	10	잡	205	205	에스**	

연번	소재지	기정				변경					소유자	비고
		지번	부번	공부면적(m <sup>2</sup> )	편입면적(m <sup>2</sup> )	지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m <sup>2</sup> )	편입면적(m <sup>2</sup> )		
22	원창동	211	11	5,680	5,680	211	11	잡	5,680	5,680	에스**	
23	원창동	213	1	93,048	90,538	213	1	대	93,048	90,538	에스**	
24	원창동	213	8	251	251	213	8	대	251	251	에스**	
25	원창동	213	9	926	926	213	9	대	926	926	에스**	
26	원창동	213	10	1,927	963.5	213	10	대	1,927	963.5	에스**	
					963.5					963.5	포스**	
27	원창동	213	11	207	207	213	11	대	207	207	에스**	
28	원창동	244	1	12,399	12,399	244	1	도	12,399	12,399	국토교통부	
29	원창동	244	2	946	946	244	2	잡	946	946	에스**	
30	원창동	244	21	63	31.5	244	21	잡	63	31.5	에스**	
					31.5					31.5	포스**	
31	원창동	244	22	300	300	244	22	잡	300	300	에스**	
32	원창동	244	3	115,441	115,441	244	3	잡	115,441	115,441	에스**	
33	원창동	244	19	15,559	15,475	244	19	잡	15,559	15,475	국방부	
34	원창동	244	20	14,181	14,181	244	20	잡	14,181	14,181	한**	
35	원창동	244	4	1,071	1,071	244	4	잡	1,071	1,071	에스**	
36	원창동	244	10	6,536	6,330	244	10	도	6,536	6,330	국토교통부	
37	원창동	244	15	2,826	703	244	15	잡	2,826	703	에스**	
38	원창동	244	16	1,505	1,505	244	16	잡	1,505	1,505	포스**	
39	원창동	256		48,504	48,504	256		장	48,504	48,504	에스**	
40	원창동	256	32	655	655	256	32	장	655	655	에스**	
41	원창동	256	7	18,388	18,388	256	7	잡	18,388	18,388	에스**	

연번	소재지	기정				변경					소유자	비고
		지번	부번	공부면적(m <sup>2</sup> )	편입면적(m <sup>2</sup> )	지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m <sup>2</sup> )	편입면적(m <sup>2</sup> )		
42	원창동	256	30	836	836	256	30	잡	836	836	에스**	
43	원창동	256	31	1,599	1,599	256	31	잡	1,599	1,599	에스**	
44	원창동	256	9	713	713	256	9	잡	713	713	에스**	
45	원창동	256	16	22,443	22,443	256	16	임	22,443	22,443	에스**	
46	원창동	256	24	273	273	256	24	장	273	273	에스**	
47	원창동	256	26	662	662	256	26	장	662	662	에스**	
48	원창동	256	27	208	208	256	27	장	208	208	에스**	
49	원창동	261	1	20	20	261	1	대	20	20	에스**	
50	원창동	261	3	54	27	261	3	대	54	27	에스**	
					27					27	포스**	
51	원창동	261	4	1	1	261	4	대	1	1	에스**	
52	원창동	294	2	66	66	294	2	장	66	66	에스**	
53	원창동	310		499	499	310		장	499	499	에스**	
54	원창동	321		106	106	321		잡	106	106	에스**	
55	원창동	437	27	28,874	7,030	437	27	잡	28,874	7,030	해양수산부	
56	원창동					392	9	잡	948.4	92	에스**	
57	원창동					486	2	도	18,249.9	284	인천광역시	
58	원창동					391	1	잡	1,405.1	74	에스**	
합계				464,891	435,876				485,494	436,326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48호

## 도시계획시설(청솔근린공원) 실시계획(최초)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청솔근린공원)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최초)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 032-458-7038) 인천광역시 월미공원 사업소 (☎ 032-440-595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공원녹지과 ☎ 032-749-872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11. 04.

### 인천광역시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22-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

2) 명 칭 : 청솔근린공원 조성사업

#### 3. 면적 및 규모

(단위 : m<sup>2</sup>)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면적 (m <sup>2</sup> )	그간실시계획 인가면적(m <sup>2</sup> )	금회실시계획 인가면적(m <sup>2</sup> )	향후실시계획 인가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최초	청솔근린 공원	도시 공원	30,436	-	30,436	-	1944.01.08. (고시 제13호)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329 [북성동 1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 성명·주소

- 별첨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

## 실시계획인가 조건

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규정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검토하고 관계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한다.
2. 본 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및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즉시 책임지고 조치하여야 한다.
4. 사업 착수 전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른 관련사항을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소음 및 날림먼지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방음벽 설치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사전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지정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사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귀속 비대상 필지에 대하여 그 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담당하는 재산관리기관과 협의후 사용 또는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7.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시 제시된 관련기관(부서)의 협의의견은 사업에 반영하여 협의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보완 협의 후 사업 시행하여야 한다.
8. 기타 시행과정에서 각종 법령 및 관련 지침을 준수(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인가권자가 별도로 지시할 수 있다.

# 토지조사 및 지장물 조사

## □ 토지조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현실적인이용사항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구	동					현황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b>계</b>				<b>49,003</b>	<b>30,436</b>		<b>30,436</b>							
1	연수	청학	산20-1	임	12,099	4,066	녹지	4,066	김OO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	1/1				
2	연수	청학	산29	임	7,041	1,093	녹지	1,093	산림청		1/1				
3	연수	청학	22-7	구	834	79	천막	79	국토교통부		1/1				
4	연수	청학	22-5	대	3,728	1,343	연못/나대지	1,343	김OO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	1/1				
5	연수	청학	산20-4	임	674	674	녹지	674	김OO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	1/1				
6	연수	청학	산20-11	임	200	200	녹지/나대지	200	김OO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산**	1/2				
									정OO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 **번길**(청학동)	1/2				
7	연수	청학	산20-6	임	797	797	녹지	797	정OO	인천시 중구 북성동2가 **_***	1/1				
8	연수	청학	산26-9	임	180	180	녹지	180	목OO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3 **** **동 ***호	1/1				
9	연수	청학	산26-1	임	2,180	2,180	녹지/건물(SL)	2,180	이OO	인천광역시 남구 청학동 **_*	1/1				
10	연수	청학	산26-3	임	627	627	녹지	627	산림청		1/1				
11	연수	청학	22-1	대	9,287	9,287	수영장/ 나대지	9,287	인천광역시		1/1				
12	연수	청학	22-3	유	575	575	수영장/ 나대지	575	인천광역시		1/1				
13	연수	청학	산21-4	임	3,820	3,820	수영장/천막	3,820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부공원사업소	1/1				
14	연수	청학	산20-3	임	5,627	3,981	주차장/ 나대지	3,981	김OO	인천광역시연수구 청학동 산**	1/1				
15	연수	청학	산20-5	임	767	767	녹지/나대지	767	박OO	인천 연수구 청학동 **_*	1/1				
16	연수	청학	산22-6	임	181	181	녹지	181	공OO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동 ***호 (*****)	1/1				
17	연수	청학	산22-2	임	315	315	녹지	315	공OO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동 ***호 (*****)	1/1				
18	연수	청학	77-1	전	271	271	건물 (조립식)	271	신OO	인천시 남구 청학동 **_*	157.5/290				
									김OO	부천시 소사구 심곡분동 ***_** **아파트*_***	132.5/290				

□ 지장물조사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1	1	청학동	77-1	주택	블록,샌드 위치판넬, 함석	$(2.1 \times 1.9) + (1.9 \times 2.1 / 2) + 5.7 \times 3.8 + (2.7 \times 2.0) + (3.0 \times 2.0 / 2)$	-	36.04	m <sup>2</sup>	신OO	연수구 청학동 77-1	1/1	신OO	연수구 청학동 77-1	본인소유	
	2	청학동	77-1	주택	블록,샌드 위치판넬, 함석	$(3.9 \times 3.6) + (3.9 \times 1.8 / 2) + (2.2 \times 2.6) + (2.2 \times 1.0 / 2) + (2.0 \times 2.0) + (2.0 \times 1.7) + (1.2 \times 1.2)$	-	53.35	m <sup>2</sup>	신OO	연수구 청학동 77-1	1/1	신OO	연수구 청학동 77-1	본인소유	
2	3	청학동	산26-1임	주택	벽돌,블록, 콘크리트, 기와	$(2.4 \times 3.9) + (5.6 \times 6.65) + (3.3 \times 0.75) + (1.65 \times 0.4)$	-	135.50	m <sup>2</sup>	이OO	연수구 청학동 산***	1/1	이OO	연수구 청학동 산***	본인소유	
	4	청학동	산26-1임	주택	블록,콘크 리트,샌드 위치판넬, 스라브	1.1X1.3+3.3X2.5+1.8X2.5	-	14.18	m <sup>2</sup>	이OO	연수구 청학동 산***	1/1	이OO	연수구 청학동 산***	본인소유	
	5	청학동	산26-1임	기름탱크	블록, 콘크리트, 스라브	5.0X1.5	-	7.50	m <sup>2</sup>	이OO	연수구 청학동 산***	1/1	이OO	연수구 청학동 산***	본인소유	
3	6	청학동	산21-4임	운동기구3 종	철판,철봉, 그들	4.5X2.5	-	11.25	m <sup>2</sup>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1/1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유치원	
	7	청학동	산21-4임	탈의실,창 고,화장실	블록, 콘크리트, 스라브	$5.0 \times 3.6 + 9.2 \times 3.6 + 7.2 \times 3.6 + 5.0 \times 3.6 + 4.5 \times 6.4 + 5.0 \times 5.0$	1층	188.50	m <sup>2</sup>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1/1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유치원	
	7-1	청학동	산21-4임	그늘막	철봉,천막	전산산출	육상	191.50	m <sup>2</sup>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1/1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유치원	
	8	청학동	산21-4임	수영장	콘크리트, 철봉	전산산출	-	269.30	m <sup>2</sup>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1/1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유치원	
	9	청학동	산21-4임	그늘막	철봉,천막	전산산출	-	53.25	m <sup>2</sup>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1/1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유치원	
	10	청학동	산21-4임	수도	콘크리트, 파이프	3.3X0.4	-	1.31	m <sup>2</sup>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1/1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유치원	
	11	청학동	산21-4임	그늘막	철봉,천막	$(4.0 \times 22.6) + (1.2 \times 0.5 / 2) + (7.0 \times 1.2 / 2)$	-	94.90	m <sup>2</sup>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1/1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유치원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3	12	청학동	산21-4임	그늘막	철봉,천막, 콘크리트, 마루	6.4X3.7	-	23.70	m <sup>2</sup>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1/1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유치원	
	13	청학동	산21-4임	그늘막	철봉,천막, 콘크리트, 마루	9.0X5.7	-	51.30	m <sup>2</sup>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1/1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유치원	
	14	청학동	산21-4임	창고	블록,콘크 리트,판넬, 천막,파이프	전산산출+ 전산산출+ 4.0X3.5	-	55.77	m <sup>2</sup>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1/1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유치원	
	15	청학동	산21-4임	물탱크	콘크리트, 철판	6.6X4.2	-	27.72	m <sup>2</sup>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1/1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유치원	
	16	청학동	산21-4임	화장실	블록, 콘크리트, 스라브	10.5X4.0	1층	42.00	m <sup>2</sup>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1/1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유치원	
	16-1	청학동	산21-4임	그늘막, 물탱크	철봉,천막	(4.9X10.1)+ 전산산출	옥상	55.61	m <sup>2</sup>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1/1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유치원	
4	17	청학동	22-5대	그늘막	철봉,판넬	전산산출	-	167.71	m <sup>2</sup>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1/1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유치원	
	18	청학동	22-5대	연못	콘크리트, 자연석	전산산출	-	119.65	m <sup>2</sup>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1/1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유치원	
5	19	청학동	산20-1임	수도	콘크리트, 파이프	3.1X0.5	-	1.55	m <sup>2</sup>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1/1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유치원	
	20	청학동	산20-1임	물탱크	콘크리트, 철판	10.8X5.0	-	54.00	m <sup>2</sup>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1/1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유치원	
	21	청학동	산20-1임	주택	블록,샌드 위치판넬	5.5X3.3	-	18.15	m <sup>2</sup>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1/1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유치원	
	22	청학동	산20-1임	창고	블록,샌드 위치판넬, 천막	2.9X5.1	-	14.78	m <sup>2</sup>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1/1	김OO	연수구 청학동 산**	**유치원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6	23	청학동	22-3유	그늘막	철봉	(36.1X3.0)+ (3.0X1.1/2)		109.95	m <sup>2</sup>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7	24	청학동	22-1대	물탱크	철드림통, 파이프	4.91+4.91+7.06	-	16.88	m <sup>2</sup>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25	청학동	22-1대	주택	샌드위치 판넬	(3.4X6.3)+ (1.3X1.8)	-	23.76	m <sup>2</sup>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26	청학동	22-1대	그늘막	철봉,콘크리트 마루	9.5X4.8	-	45.60	m <sup>2</sup>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27	청학동	22-1대	수영장	콘크리트, 철봉	전산산출	-	135.64	m <sup>2</sup>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28	청학동	22-1대	펌프시설	블록 콘크리트, 슬라브	(2.2X2.5)+ (2.5X0.4/2)	-	6.00	m <sup>2</sup>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29	청학동	22-1대	옹달샘	콘크리트, 자연석	전산산출	-	1.25	m <sup>2</sup>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30	청학동	22-1대	사열대	콘크리트	6.0X3.4	-	20.40	m <sup>2</sup>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31	청학동	22-1대	사육장	유조망,철 봉,천막,미 널	4.2X4.0	-	16.80	m <sup>2</sup>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32	청학동	22-1대	창고	유조망,철 봉,천막,미 널	(2.8X5.5)+ (0.9X5.5/2)	-	17.62	m <sup>2</sup>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33	청학동	22-1대	사육장	철망,철봉, 천막,합판	1.6X1.6	-	2.56	m <sup>2</sup>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34	청학동	22-1대	사육장	철봉,철망, 비닐,루핑	9.7X6.0	-	58.20	m <sup>2</sup>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7	35	청학동	22-1대	오리사육 장	철봉,철망, 천막,루핑	전산산출	-	63.46	m <sup>2</sup>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36	청학동	22-1대	개구리사 육장	철봉,철망, 천막	2.0X1.5	-	3.00	m <sup>2</sup>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37	청학동	22-1대	사육장	철망,철봉, 천막,샌드 위치판넬	5.0X1.8	-	9.00	m <sup>2</sup>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38	청학동	22-1대	사육장	철망,철봉, 천막	(6.2X3.1)+ (1.9X3.1/2)	-	22.04	m <sup>2</sup>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39	청학동	22-1대	사열대	블록,샌드 위치판넬, 콘크리트	전산산출	-	52.89	m <sup>2</sup>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40	청학동	22-1대	사열대	콘크리트	(5.0X2.3)+ (5.0X0.5/2)	-	12.74	m <sup>2</sup>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41	청학동	22-1대	식당	블록,샌드위 치판넬,콘크 리트,천막	15.4X9.2	-	141.68	m <sup>2</sup>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42	청학동	22-1대	그늘막	철봉	전산산출	-	215.78	m <sup>2</sup>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43	청학동	22-1대	휴게실	철봉,천막	8.0X5.0	-	40.00	m <sup>2</sup>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44	청학동	22-1대	화로	블록,철판, 연통	1.2X1.0	-	1.20	m <sup>2</sup>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45	청학동	22-1대	물탱크	콘크리트, 철판	2.0X1.2	-	2.40	m <sup>2</sup>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46	청학동	22-1대	수도	콘크리트, 파이프	2.9X0.5	-	1.45	m <sup>2</sup>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7	47	청학동	22-1대	그늘막	철봉,천막, 마루	14.0X3.0	-	42.00	m <sup>2</sup>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48	청학동	22-1대	그늘막	철봉,천막, 마루	8.2X3.1	-	25.42	m <sup>2</sup>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49	청학동	22-1대	옹달샘	콘크리트, 자연석	전산산출	-	1.27	m <sup>2</sup>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50	청학동	22-1대	그늘막	철봉	전산산출	-	163.81	m <sup>2</sup>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51	청학동	22-1대	그늘막	철봉,천막	14.2X5.5	-	78.10	m <sup>2</sup>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52	청학동	22-1대	그늘막	철봉,천막, 콘크리트, 마루	(5.3X3.0)+ (7.7X4.0)+ 전산산출	-	64.04	m <sup>2</sup>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53	청학동	22-1대	그늘막	철봉,천막, 콘크리트, 마루	6.8X5.9	옥상	40.12	m <sup>2</sup>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53-1	청학동	22-1대	창고	콘크리트, 스라브, 철문	6.8X2.6	1층	17.68	m <sup>2</sup>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54	청학동	22-1대	그늘막	철봉,천막	6.8X6.3	-	42.84	m <sup>2</sup>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55	청학동	22-1대	화장실	콘크리트, 스라브,샌드 위치판넬	9.5X5.5	1층	46.75	m <sup>2</sup>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55-1	청학동	22-1대	그늘막	철봉,천막	(4.0x5.6)+ (5.6X1.6/2)	옥상	26.88	m <sup>2</sup>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56	청학동	22-1대	물탱크	고무통	0.75X0.75X3.14	-	1.76	m <sup>2</sup>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7	57	청학동	22-1대	매점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	7.4X2.5	-	18.50	m <sup>2</sup>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58	청학동	22-1대	배수 펌프장	콘크리트, 스라브	전산산출	-	82.01	m <sup>2</sup>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58-1	청학동	22-1대	그늘막	철봉,천막	전산산출	-	47.03	m <sup>2</sup>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59	청학동	22-1대	그늘막	철봉,천막	37.2X3.5	-	130.20	m <sup>2</sup>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60	청학동	22-1대	수영장	콘크리트, 철봉	전산산출	-	621.21	m <sup>2</sup>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61	청학동	22-1대	매점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천막	7.5X4.0	-	30.00	m <sup>2</sup>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61-1	청학동	22-1대	창고	콘크리트, 스라브	3.0X2.8	-	8.40	m <sup>2</sup>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62	청학동	22-1대	샤워실	콘크리트, 파이프, 자연석	전산산출	-	6.71	m <sup>2</sup>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63	청학동	22-1대	그늘막	철봉,천막	4.3X4.3	-	18.49	m <sup>2</sup>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 소유	
8	64	청학동	77-1	주택	벽돌,합석 기와	전산산출	79.65	0.54	m <sup>2</sup>	신OO	연수구 청학동 ***_*	1/1	신OO	연수구 청학동 ***_*	본인소유	
	65	청학동	77-1	화장실	블럭,슬라브	전산산출	26.07	12.04	m <sup>2</sup>	신OO	연수구 청학동 ***_*	1/1	신OO	연수구 청학동 ***_*	본인소유	
9	66	청학동	산20-5	주택	벽돌,블럭, 기와	전산산출	147.1 4	44.11	m <sup>2</sup>	박OO	연수구 청학동 ***_*	1/1	박OO	연수구 청학동 ***_*	본인소유	
10	67	청학동	산20-11	주택	벽돌,블럭, 기와	전산산출	116.5 4	13.27	m <sup>2</sup>	백OO	연수구 청학동 ***_*	1/1	백OO	연수구 청학동 ***_*	본인소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56호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2차)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28.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명칭(변경 없음): 영종하늘도시 A8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변경 없음): 아시아신탁(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3(서초동)]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변경)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917일원 (영종하늘도시 A8블록)

나. 대지면적(지적측량 결과 반영)

- 변경 전: 66,707.8㎡

- 변경 후: 66,674.1㎡ (감 33.7㎡)

다. 연 면 적: 182,954.6627㎡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 지하2층, 지상 20층 / 13개동 / 1,153세대

· 77A형 222세대, 77B형 238세대, 84A형 487세대, 84B형 48세대, 84C형 158세대

-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등 20개동

4. 사업시행기간: 2019. 10. 31. ~ 2022. 1. 31.(변경 없음)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변경 없음)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59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29.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주상복합건축물 신축공사
2. 사업주체: 넥스플랜(주) 대표 조지호,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주) 대표 박정철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7 C동 206호(문정동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1-2)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25 A동 306호(문정동, 에이치비지니스파크)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
  -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2 (송도1공구 B2블록)
  - 나. 대지면적: 32,909.9㎡
  - 다. 연 면 적: 320,396.8171㎡
  -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 지상 10~59층 / 5개동 / 1,205세대  
 - 84A형 396세대, 84B형 108세대, 102A형 288세대, 120A형 396세대  
 157A형 8세대, 157B형 2세대, 157C형 1세대, 175A형 4세대 175B형 2세대
    - 업무시설(오피스텔): 지상 50층 / 1개동 / 320호  
 - 59A형 274세대, 59B형 46세대
    - 부대복리시설 : 판매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17개동
  - 마. 사업비: 965,125,518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19. 12. ~ 2023. 12.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809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 10. 29.

## 인천광역시장

변경등록 사항 : 주소지 변경

○ 단체명 : (사)꿈꾸는 마을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단체명	대표자	변경 사항			변경 사유	주관과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013-0-인천 광역시-2호 (2013.1.11.)	(사)꿈꾸는 마을	신영미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 48번길 21-27(운남동)	인천광역시 중구 흰바위로 41 304호(운서동, 영종에어포트1)	소재지 변경	문화예술과

인천광역시공고 2019-1817호

**도시계획시설(도로명: 광로3류9호선, 대로1류11호선,  
사업명: 석남 혁신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도로 확장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명: 광로3류9호선, 대로1류11호선, 사업명: 석남 혁신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도로 확장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 합니다.

관련 공고문은 인천광역시 도로과(☎440-3794) 및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1. 4.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4-2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명: 광로3류9호선, 대로1류11호선] 도로 확장공사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명: 광로3류9호선, 대로1류11호선, 석남 혁신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도로 확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봉수대로(광로3류9호선) L=160m, B=39.5m→45m

- 길주로(대로1류11호선) L=210m, B=35m→38m

##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쿠거인더주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30, 14층(역삼동)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2.1.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공부면적	편입면적	잔여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석남동	224-8	잡	997	331	666	에스케이 인천석유화학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415(원창동)		
2	석남동	224-15	잡	608	44	564	에스케이 인천석유화학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415(원창동)		
3	석남동	229-13	임	869	249	620	에스케이 인천석유화학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415(원창동)		
4	석남동	229-14	임	99	99	0	에스케이 인천석유화학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415(원창동)		
5	석남동	230-1	전	113	58	55	에스케이 인천석유화학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415(원창동)		
6	석남동	230-3	전	223	215	8	에스케이 인천석유화학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415(원창동)		
7	석남동	산 119-28	임	884	279	605	에스케이 인천석유화학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415(원창동)		
8	석남동	산 125-6	임	46	29	17	에스케이 인천석유화학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415(원창동)		
9	석남동	산 125-13	임	490	70	420	에스케이 인천석유화학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415(원창동)		
10	석남동	산 125-14	임	35	35	0	에스케이 인천석유화학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415(원창동)		
계				4,364	1,409	2,955				

## 7.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818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을 공고합니다.

### □ 변경(말소)등록사항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주관과	등록 구분	비고
2011-0- 인천광역시 -19	(사)환경실천연합회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53번길 12, 401호(계산동)	조준석	2011.4.20	환경연구사업 환경보호운동	환경정책과	말소	말소일 2019.10.30.

2019년 10월 30일

#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820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30.

## 인천광역시장

등록번호 (등록일자)	단체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말소일자	주관과	비고
2014-0-인천광역시-20 (2014.7.15.)	바른체형 연구소	인천시 계양구 경명대로 1074, 삼환빌딩 402	장기학	체형관리 조 사 위탁 및 교 육사업 등	2019.10.24.	체 육 진흥과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821호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공사완료 공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9. 11. 4.

### 인천광역시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50(공촌동 259번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 명칭: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사업(1단계)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적: 158,184㎡
- 규모: 413,000톤/일(고도정수처리시설[1단계] Q=335,000톤/일)  
건축연면적 A=20,180.56㎡

####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도화동)

#### 5. 사업기간

- 2017. 1. 9. ~ 공사완료 공고일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823호

##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자동차)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 인천광역시장

1. 공매대상 재산(자동차) : 인천06바1281 등 67대 (붙임목록 참조)

2. 공매일정

가. 입찰신청(등록) 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19.11.19.(화) ~ 2019.11.26.(화) 14:00

- 은행 가상계좌 부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입찰참여 마감 당일은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 30분전에는 입찰참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결과 및 매각결정은 입찰 마감 후 (주)오토마트 인터넷공매 홈페이지에 게시

나. 입찰참여 마감 : 2019.11.26.(화) 14:00

**※ 14:00 이후에 입찰보증금이 입금된 입찰자는 입찰권한을 부여하지 않음.**

다. 입찰결과 발표 : 2019.11.27.(수) 14:00

- 마감 후 (주)오토마트 인터넷 공매사이트(<http://www.automart.co.kr>)에 발표

3. 공매방법

가.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 입찰 방식 적용

나. 공매장소 : (주)오토마트 인터넷 공매사이트

4.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가. 공매공고의 등기(등록)전까지 등기(등록)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채권

(지방세징수법 제81조)

- ①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 ② 교부 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 ③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④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 ⑤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⑥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 ⑦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나. 배분요구종기일 : 2019.11.26.(화) 18:00

#### 5. 입찰참가 및 등록방법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 입찰등록 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입찰신청 후 [입찰참여]에서 입찰가를 반드시 등록해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입찰서와 공매보증금은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을 변경하거나 취소 및 반환할 수 없음).

나. 선택 차량에 대한 입찰자격은 다음 계좌에 공매보증금을 매각예정액 10/100 이상을 입금해야 부여됩니다.

※ 주의 : 은행 업무시간외에는 입금이 안 될 수 있으며 은행사정상의 미 입금은 미납 처리됩니다.

- 공매보증금 납부(입금)계좌 : 입찰신청 후 입금계좌번호 자동부여 (입찰신청 후 [공매+ 입찰자명]으로 은행의 가상계좌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 공매보증금은 입찰신청을 최종 완료한 후 보증금의 총 합계액을 가상계좌로 입금하셔야 정상처리 됩니다.
- 입찰 후 입금하기 전까지는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총 합계액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입금을 한 후에 추가 입찰할 경우에는 가상계좌가 추가 발급되므로 이 경우에는 새로 발급된 가상계좌로 추가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합계액으로 입금합니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매각결정일 부터 3일 이내**(공휴일이면 익 일)에 환불됩니다.

- 라.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 마.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9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 기간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바. 입찰자 및 낙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매각결정 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매와 관련된 미성년자의 모든 행위는 취소됩니다(제출서류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 6. 낙찰자 결정기준

- 가.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단독입찰 가능)
- 나.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 제출자
- 다. 체납자 등 「지방세징수법」 제77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 자

#### 7. 매수대금 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부터 7일 이내**

- 가. 매수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회의 최고 절차(7일 이내)를 거친 후, 해당차량은 재 공매 조치합니다.
- 나. 매수대금 입금계좌는 입찰보증금 입금계좌와는 상이하며 낙찰시 우리 시 (공매 담당자)에게 입금계좌 확인 후 낙찰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다. 등록한 입찰자의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매각결정통지서 및 납부최고서는 송달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예- 아파트 동, 호수가 없는 경우 등)

#### 8.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 차 공매최저가격**

#### 9. 공매중지 및 매각결정의 취소

- 가. 공매진행 중 또는 낙찰 완료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된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 등을 은행 등에 완납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되고 배분 계산서 작성 전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 나. 매수대금(잔금)을 납부 최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10. 공매물건의 인도절차 및 권리이전 비용

- 가. 매수대금 납부 후 우리 시(공매 담당자)에게 공매물건 이전 등록지를 통보하고 납부 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권리이전에 따른 제비용은 낙찰자의 부담입니다.
- 나. 낙찰 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록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 등 또한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다. 정기검사를 경과한 자동차를 낙찰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일 부터 15일내 검사를 받는 등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 해당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조치하여야 합니다.
- 라. 공매물건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자동차보관소에서 인도되며, 운반과 그 운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 마. 직권말소 자동차는 말소부활 → 검사 → 신규 등록 등의 절차 이후 이전등록이 가능하며, 이전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1. 공매물건의 하자책임 및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등

- 가.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자동차 점검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입찰자의 책임아래 각종 공부 확인 및 자동차보관소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 자동차 점검서는 자동차 상태 및 중고차 시세 등을 감안하여 (주)오토마트에서 작성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차령 10년 초과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점검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매수대금 납부 후 그 매각물건에 생긴 소실, 훼손, 도난, 기능상 이상 유무 등 위험은 그 물건의 이전등록 여부,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낙찰자의 부담이므로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완납한 때에는 즉시 인수하여야 합니다.

##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공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의 취득, 등록세 과세대상의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소득공제 제외**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매물건 점검과정에서 자동차 급발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안전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 소유권이전 시 기존 번호판을 교부해드리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등록 관청에서 신규(전국)번호판으로 재교부 바랍니다.**

라. 낙찰자 소유권이전등록 후 보관소에서 차량인수 시 필히 번호판 부착 및 봉인 후 출고하시기 바랍니다.(번호판 미 부착 운행 시 과태료 부과대상)

마. **개인 신용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는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지바랍니다.**

**예) 매각결정통지서의 전 차주의 주민(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등.**

바. 차량 보관 장소 : (주)오토마트 보관소 (☎ 032-578-0442)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징수기동팀 자동차공매 담당 주무관 박은영(☎ 032-440-8445, 84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공매대상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제조사	연식	매각예정 가격(원)	공매 차수	인도일
1	인천06바1281	볼보덤프	볼보	2009	18,000,000	5회	20190305
2	45도7066	링컨MKS	링컨	2010	1,750,000	4회	20190315
3	02마3381	렉스턴	쌍용	2005	800,000	3회	20190323
4	68로4887	체어맨	쌍용	2011	1,600,000	3회	20190513
5	01너6697	싼타페	현대	2004	360,000	2회	20190402
6	02무6349	SM7	르노삼성	2005	360,000	2회	20190416
7	10무4768	INFINITIG35S	인피니티	2007	900,000	2회	20190416
8	42조7720	SM7	르노삼성	2012	3,150,000	2회	20190516
9	64저3332	SM520V	르노삼성	2002	225,000	2회	20190522
10	13고0932	그랜저	현대	2016	13,000,000	1회	20190701
11	32어0742	쏘나타	현대	2012	1,000,000	1회	20190701
12	인천82다7247	포터	현대	2002	400,000	1회	20190701
13	20수8928	쏘나타	현대	2011	2,000,000	1회	20190702
14	02노1321	NEW EF쏘나타 LPG 장애인차	현대	2002	200,000	1회	20190704
15	16러0641	SM3	르노삼성	2011	1,000,000	1회	20190704
16	33우0840	무쏘	쌍용	2001	400,000	1회	20190708
17	43도5881	오피러스	기아	2010	700,000	1회	20190708
18	68더9948	체어맨	쌍용	2011	3,000,000	1회	20190708
19	16너3394	카렌스	기아	2009	1,000,000	1회	20190709
20	01구2145	BMW520 i	BMW	2002	400,000	1회	20190710
21	06로1656	그랜저	현대	1995	200,000	1회	20190710
22	10루4149	그랜저XG	현대	2000	200,000	1회	20190710
23	18러1615	SM520	르노삼성	2002	200,000	1회	20190710
24	20부3370	투싼	현대	2008	300,000	1회	20190710
25	30다3264	그랜저XG	현대	2000	200,000	1회	20190710

## 자동차 구매대상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제조사	연식	매각예정 가격(원)	구매 차수	인도일
26	52노9870	아반떼	현대	2007	800,000	1회	20190710
27	59도8368	카니발	기아	2002	400,000	1회	20190710
28	73부4776	싼타페	현대	2000	300,000	1회	20190710
29	19주3342	K3	기아	2013	3,000,000	1회	20190712
30	55나4550	링컨MKS	링컨	2011	1,500,000	1회	20190712
31	59마8463	투싼	현대	2016	10,000,000	1회	20190712
32	29더4043	캡티바 2.0 디젤	시보레	2018	16,000,000	1회	20190715
33	66부4381	쏘나타	현대	2010	1,000,000	1회	20190716
34	19버3590	캐딜락STS	기타외제차	2011	4,500,000	1회	20190717
35	30서1105	싼타페	현대	2010	2,000,000	1회	20190717
36	55주1536	제네시스 쿠페 (GENESIS Coupe)	현대	2010	2,000,000	1회	20190717
37	17어5654	SM7	르노삼성	2005	300,000	1회	20190718
38	65저6608	BENZ S350	벤츠	2003	500,000	1회	20190718
39	87나1672	다마스벤	대우	2011	500,000	1회	20190718
40	97가7968	액티언 스포츠	쌍용	2006	800,000	1회	20190719
41	84부7954	포터 II (PORTER II)	현대	2014	3,000,000	1회	20190720
42	58저1372	쏘나타	현대	2011	2,500,000	1회	20190722
43	19우7975	로체	기아	2009	300,000	1회	20190723
44	55조1343	스포티지	기아	2007	700,000	1회	20190724
45	07누3605	프리스타일	포드	2006	1,000,000	1회	20190725
46	16머4535	트랙스1.4	시보레	2014	5,000,000	1회	20190725
47	51나8444	제네시스	현대	2014	17,000,000	1회	20190725
48	85도1344	포터 II (PORTER II)	현대	2011	1,500,000	1회	20190725
49	05보7587	그랜저	현대	2006	1,000,000	1회	20190726
50	24부1020	레이	기아	2013	3,000,000	1회	20190726

## 자동차 공매대상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제조사	연식	매각예정 가격(원)	공매 차수	인도일
51	01수6524	쏘렌토	기아	2002	400,000	1회	20190729
52	25러9973	제네시스쿠페 (GENESISCoupe)	현대	2010	1,500,000	1회	20190729
53	33노4099	그랜저XG	현대	2001	200,000	1회	20190729
54	04모3300	NEW그랜저XG (NEWGRANDEURXG)	현대	2004	200,000	1회	20190730
55	08보9439	프라이드	기아	2006	300,000	1회	20190730
56	54구9986	쏘렌토	현대	2002	400,000	1회	20190730
57	55너4738	쏘나타	현대	2010	1,500,000	1회	20190730
58	64어1645	인피니티FX35	닛산	2007	2,000,000	1회	20190730
59	49버1143	A4 2.0TFSIQuattro	아우디	2010	3,500,000	1회	20190731
60	55무5246	그랜저	현대	2009	1,000,000	1회	20190731
61	57로6519	쏘나타	현대	2010	1,500,000	1회	20190731
62	42무9259	모닝	기아	2015	3,000,000	1회	20190801
63	48오1514	베라크루즈	현대	2010	4,000,000	1회	20190801
64	20다9267	BMW528i	BMW	2013	15,000,000	1회	20190802
65	55도3423	스타렉스	현대	2004	400,000	1회	20190802
66	59모7908	Passat2.0TDI	폭스바겐	2008	1,500,000	1회	20190802
67	91로9655	현대5톤초장축카고트럭(터보)	현대	2002	4,000,000	1회	20190805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9-1829호

## 인천광역시 수봉문화회관 민간위탁 법인(단체)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봉문화회관 위탁 법인(단체)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11. 1.

### 인천광역시장

1. 사업명 : 인천광역시 수봉문화회관 민간위탁(관리 및 운영)
2.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3. 위탁시설 개요

- 가. 시설명 : 인천광역시 수봉문화회관
- 나.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안길 78(송의동)
- 다. 시설규모 : 연면적 3,895㎡(지하2층, 지상4층)
  - 소극장(160석), 전시실(2실), 연습실, 사무실 등
- 라. 주요시설

층 별	면적(㎡)	주 요 시 설
총면적	3,895	
지하 2층	210	기계전기실(90㎡), 사무실(120㎡)
지하 1층	840	소극장(657㎡), 영화인협회(83㎡), 사진협회 암실(25㎡),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인천지회(35㎡), 공용부문(40㎡)
1층	685	제1전시실(270㎡), 제2전시실(270㎡), 전시창고(60㎡), 위탁사무실(30㎡), 소극장그리드(30㎡), 공용부문(205㎡)
2층	840	예총사무처(195㎡), 연예협회(90㎡), 음악협회(75㎡), 미술협회(63㎡), 사진작가협회(117㎡), 회의실(195㎡), 공용부문(105㎡)
3층	840	무용협회(55㎡), 예총의상 및 소품실(71㎡), 미술협회(24㎡), 샤워실(2개소, 30㎡), 연습실(180㎡), 공용부문(120㎡)
4층	300	합창연습실(120㎡), 강의실(60㎡), 문인협회(75㎡), 공용부문(45㎡)

#### 4. 위탁대상 사무

- 가. 시민의 문화육구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 나. 수봉문화회관 시설물 관리·운영(소극장, 연습장 대관 및 기획공연 등)
- 다. 기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5. 위탁정원 및 사업비

- 정원 : 5명(관장1, 행정2, 기술2)
- 사업비(2020년도) : 616백만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 예산편성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6. 신청자격

- 가. 공고일 기준 사무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
- 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공고일 현재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중 민간위탁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 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위반한 법인·단체

## 7. 위탁운영 조건

- 가.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이행하여야 함.
- 나. 관장은 수탁법인(단체)의 겸임을 금지함.
- 다. 수탁법인(단체)은 위탁자가 제시하는 별도의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 및 협약의 이행보증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당해 위탁운영을 취소·정지시킬 수 있음. (공증 비용은 수탁기관 부담)
- 라. 문화회관 운영 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기존 위탁운영 법인(단체)의 근로자(정원) 중 과반수이상 고용 승계하여야 함.
- 마. 수탁법인(단체)은 수봉문화회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사무편람)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 운영규정(사무편람)은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바. 문화회관 운영에 필요한 자본적 비품·집기는 자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정기 보고를 하여야 하며, 수탁법인(단체)에서는 비품·집기의 유지관리 책임을 짐.

## 8. 회계처리 보고 및 감사

- 가. 수탁법인(단체)은 매년 8월말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나. 수탁법인(단체)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결산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때 외부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결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비용은 수탁법인(단체) 부담으로 함.

- 다. 운영 상 수입내역은 매월 위탁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매 분기별 운영실적 등을 정기보고 하여야 함.
- 라. 위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예산 교부신청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민간위탁금을 교부(분기별)할 수 있으며, 수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포함한 감사, 감독,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마. 임대료, 대관료, 관람료, 강좌수입, 공연수익금 등 수봉문화회관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위탁자의 수입으로 함.

## 9. 신청접수

- 가. 공고기간 : 2019. 11. 1.(금) ~ 2019. 11. 15.(금) / 15일간
- 나. 접수기간 : 공고기간과 동일
- 다.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본관 5층) 문화진흥팀(☎032-440-4022)  
 ※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며,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라. 제출서류 : 아래의 서류를 편철하여 9부 제출
- 라. 제출서류
  - 1) 공모신청서 1부
  - 2) 공모 신청자 서약서 1부
  - 3)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1부
  - 4) 사용인감계 1부
  -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 첨부) 및 법인허가증 사본 1부.  
 ※ 비영리민간단체는 고유번호증,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서류 제출
  - 6) 정관 1부
  - 7) 발표자(대표자 등) 인적사항 및 재직증명서 1부
  - 8) 수봉문화회관 수탁 운영 사업계획서(붙임 서식 참조) 9부
  - 9) 제안서(PT 발표자료) 9부
  - 10) 기타 증빙자료 1부
  - 11)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내용을 담은 전자파일 USB 1개  
 ※ 신청서식 :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공고/고시에서 다운로드

## 10. 선정방법

- 가.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결정
  - 일시 : 2019. 11. 25(월) 14:00 예정
  - 장소 : 인천광역시청 어학실 제3강의실(지하1층)  
 ※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 변경 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 나. 심사방법 :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 발 표 자 : 법인(단체) 대표 또는 대리인(소속 직원 또는 회원) 1명
  - 발표순서 : 접수순서 순으로 발표
  - 발표내용 : 신청서류 브리핑 및 운영의지, 비전 제시 등
  - 발표시간 :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다.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계	법인(단체)의 적격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상태 및 경영능력	관련사업 추진실적
100	30	40	20	10

- 신청 법인(단체)이 제출한 자료와 사업계획 발표 자료(질의응답 포함)를 평가하여 채점
- 심사항목은 다른 심사항목과 연관하지 않고 독립 평가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심사항목의 점수 영점 처리
- 각 신청 법인(단체)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단,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다수의 법인(단체)이 신청하였다도 적격자심사위원회 최종 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획득한 법인(단체)이 없을 경우에는 적격 법인(단체)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 공모
- 동점자가 있을 경우 아래 평가 항목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  
\* 사업계획의 적정성, 법인(단체)의 적격성, 재정상태 및 경영능력, 관련사업 추진실적 순
- 재공모에서 신청법인(단체)이 단독 응모일 경우, 1개 법인(단체)에 대해서 심사하고 심사 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법인(단체)으로 선정

## 11. 선정결과 통보

- 가. 선정된 기관에게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2019. 11. 26.(화)]
- 나. 위수탁 협약 체결 [2019. 12. 13.(금)까지]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12. 기타사항

- 가. 현장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관계규정, 현지 여건 등 미 숙지 또는 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선정을 무효로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다.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협약 체결을 하지 않을 시에는 수탁자 선정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최종 평가 점수 70점 이상자 중 차순위자와 별도 위수탁협약 체결 할 수 있음.
- 라. 협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포함된 협약 내용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청 문화예술과(83032-440-4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인천광역시 수봉문화회관 민간위탁 법인(단체) 공모 참가신청 서류 1부. 끝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831호

## 인천광역시 국악회관 민간위탁 법인(단체)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국악회관 수탁 법인(단체)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11. 1.

### 인천광역시장

1. 사업명 : 인천광역시 국악회관 민간위탁(관리 및 운영)
2.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3. 위탁시설 개요

가. 시설명 : 인천광역시 국악회관

나.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안길 78(송의동)

다. 시설규모 : 연면적 1,184㎡(지하1층, 지상3층)

- 공연장(118석), 연습실, 사무실 등

라. 주요시설

층 별	면적(㎡)	주요 시설
총면적	1,184.484	
지하 1층	378.525	기계·전기실(117.3㎡), 기악연습실(43.2㎡), 성악연습실(36㎡), 협연 및 무용연습실(63㎡), 악기보관실(28.4㎡), 공용부문(94.225㎡)
1층	367.348	국악협회(24.8㎡), 다목적 연습실(90.7㎡), 위탁사무실(38.1㎡), 공용부문(213.748㎡)
2층	360.448	공연장(245.44㎡), 공용부문(115.008㎡)
3층	78.163	공조실(41.6㎡), 공용부문(36.563㎡)

#### 4. 위탁대상 사무

가.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나. 국악회관 시설물 관리·운영(공연장, 연습장 대관 등)

다. 기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5. 위탁정원 및 사업비

- 정원 : 2명(관장1, 행정1)

- 사업비(2020년도) : 249백만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예산편성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6. 신청자격

- 가. 공고일 기준 사무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  
 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공고일 현재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중 민간위탁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위반한 법인·단체

## 7. 위탁운영 조건

- 가.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이행하여야 함.  
 나. 관장은 수탁법인(단체)의 겸임을 금지함.  
 다. 수탁법인(단체)은 위탁자가 제시하는 별도의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 및 협약의 이행보증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당해 위탁운영을 취소·정지시킬 수 있음.  
 (공증 비용은 수탁기관 부담)  
 라. 국악회관 운영 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기존 위탁운영 법인(단체)의 근로자(정원) 중 과반수이상 고용 승계하여야 함.  
 마. 수탁법인(단체)은 국악회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사무편람)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 운영규정(사무편람)은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바. 국악회관 운영에 필요한 자본적 비품·집기는 자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정기 보고를 하여야 하며, 수탁법인(단체)에서는 비품·집기의 유지관리 책임을 짐.

## 8. 회계처리 보고 및 감사

- 가. 수탁법인(단체)은 매년 8월말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수탁법인(단체)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결산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때 외부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결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비용은 수탁법인(단체) 부담으로 함.  
 다. 운영 상 수입내역은 매월 위탁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매 분기별 운영실적 등을 정기보고 하여야 함.

라. 위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예산 교부신청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민간위탁금을 교부(분기별)할 수 있으며, 수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포함한 감사, 감독,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마. 임대료, 대관료, 관람료, 강좌수입, 공연수익금 등 국악회관 운영을 통해 발생되는 모든 수입은 위탁자의 수입으로 함.

## 9. 신청접수

가. 공고기간 : 2019. 11. 1.(금) ~ 2019. 11. 15.(금) / 15일간

나. 접수기간 : 공고기간과 동일

다.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본관 5층) 문화진흥팀(☎032-440-4022)

※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며,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공모신청서 1부

2) 공모 신청자 서약서 1부

3)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1부

4) 사용인감계 1부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 첨부) 및 법인허가증 사본 1부.

※ 비영리민간단체는 고유번호증,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서류 제출

6) 정관 1부

7) 발표자(대표자 등) 인적사항 및 재직증명서 1부

8) 국악회관 수탁 운영 사업계획서(붙임 서식 참조) 9부

9) 제안서(PT 발표자료) 9부

10) 기타 증빙자료 1부

11)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내용을 담은 전자파일 USB 1개

※ 신청서식 :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공고/고시에서 다운로드

## 10. 선정방법

가.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결정

- 일시 : 2019. 11. 25(월) 14:00 예정

- 장소 : 인천광역시청 어학실 제3강의실(지하1층)

※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 변경 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나. 심사방법 :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 발표자 : 법인(단체) 대표 또는 대리인(소속 직원 또는 회원) 1명

- 발표순서 : 접수순서 순으로 발표

- 발표내용 : 신청서류 브리핑 및 운영의지, 비전 제시 등

- 발표시간 :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다.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계	법인(단체)의 적격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상태 및 경영능력	관련사업 추진실적
100	30	40	20	10

- 신청 법인(단체)이 제출한 자료와 사업계획 발표 자료(질의응답 포함)를 평가하여 채점
- 심사항목은 다른 심사항목과 연관하지 않고 독립 평가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심사항목의 점수 영점 처리
- 각 신청 법인(단체)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단,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다수의 법인(단체)이 신청하였다도 적격자심사위원회 최종 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획득한 법인(단체)이 없을 경우에는 적격 법인(단체)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 공모
- 동점자가 있을 경우 아래 평가 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  
\* 사업계획의 적정성, 법인(단체)의 적격성, 재정상태 및 경영능력, 관련사업 추진실적 순
- 제공모에서 신청법인(단체)이 단독 응모일 경우, 1개 법인(단체)에 대해서 심사하고 심사 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법인(단체)으로 선정

## 11. 선정결과 통보

- 가. 선정된 기관에게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2019. 11. 26.(화)]
- 나. 위수탁 협약 체결 [2019. 12. 13.(금)까지]
-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12. 기타사항

- 가. 현장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관계규정, 현지 여건 등 미 숙지 또는 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다도 선정을 무효로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다.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협약 체결을 하지 않을 시에는 수탁자 선정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최종 평가 점수 70점 이상자 중 차순위자와 별도 위수탁협약 체결 할 수 있음.
- 라. 협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포함된 협약 내용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청 문화예술과(☎032-440-4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인천광역시 국악회관 민간위탁 법인(단체) 공모 참가신청 서류 1부. 끝.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832호

## 문학시어터 민간위탁 운영 법인(단체)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문학시어터 민간위탁 운영 법인(단체)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11. 1.

###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문학시어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및 운영)

2.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3. 위탁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 문학시어터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 문학야구장 1루 지하(문학동)

다. 시설규모 : 공연장 742.65㎡(관람석 : 144석, 분장실(남·여), 대기실(남·여), 연습실)

4. 위탁대상 사무

가. 공연장 운영(대관에 관한 사항 전반 등)

나. 공연장 시설 및 자산(비품 등) 관리

다. 공연기획, 홍보 등 인천문화예술진흥 및 문학시어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위탁정원 및 사업비

가. 운영인력(정원) : 총 3명(극장장 1, 조명기사 1, 음향기사 1)

나. 사업비 : 285백만원 \* 2020년 본예산 편성 증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경상경비(인건비, 일반운영비) : 198백만원

- 사업비(공연기획 등 인천문화예술진흥사업) : 87백만원

6. 신청자격

가. 공고일 기준 사무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공고일 현재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위반한 법인·단체

## 7. 위탁운영 조건

가.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이행하여야 함.

나. 문학시어터의 장(극장장)은 수탁법인(단체)의 겸임을 금지함.

다. 문학시어터 운영 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 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문학시어터의 안정적 운영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기존 위탁운영 법인(단체)의 근로자(정원) 중 과반수 이상 고용 승계하여야 함.

라.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 의거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문학시어터의 대관료, 공연료, 기타사용료 등을 징수하여야 하며 수탁자 자의로 책정할 수 없음.

마. 대관수입, 공연수입 등 문학시어터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위탁자의 수입으로 함.

바.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시하는 별도의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 및 협약의 이행보증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당해 위탁운영을 취소·정지시킬 수 있음.

(공증 비용은 수탁기관 부담)

사. 수탁자는 문학시어터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사무편람)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 운영규정(사무편람)은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아. 문학시어터 운영에 필요한 자본적 비품·집기는 자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정기 보고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비품·집기의 유지관리 책임을 짐.

## 8. 회계처리 보고 및 감사

가. 수탁자는 매년 8월말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결산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때 외부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결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함.

다. 운영 상 수입내역은 매월 위탁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매 분기별 운영실적 등을 정기보고 하여야 함.

라. 위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예산 교부신청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민간위탁금을 교부(분기별)할 수 있으며, 수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포함한 감사, 감독,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성실히 임해야 함.

## 9. 신청접수

가. 공고기간 : 2019. 11. 1.(금) ~ 2019. 11. 15.(금) / 15일간

나. 접수기간 : 공고기간과 동일

다.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본관 5층) 문화진흥팀(☎032-440-4024)

※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며,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공모신청서 1부

2) 공모 신청자 서약서 1부

3)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1부

4) 사용인감계 1부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 첨부) 및 법인허가증 사본 1부.

※ 비영리민간단체는 고유번호증,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서류 제출

6) 정관 1부

7) 발표자(대표자 등) 인적사항 및 재직증명서 1부

8) 문학시어터 수탁 운영 사업계획서(붙임 서식 참조) **9부**

9) 제안서(PT 발표자료) **9부**

10) 기타 증빙자료 1부

11)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내용을 담은 전자파일 USB 1개

※ 신청서식 :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공고/고시에서 다운로드

## 10. 선정방법

가.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결정

- 일시 : 2019. 11. 25(월) 14:00 예정

- 장소 : 인천광역시청 어학실 제3강의실(지하1층)

※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 변경 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나. 심사방법 :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 발표자 : 법인(단체) 대표 또는 대리인(소속 직원 또는 회원) 1명

- 발표순서 : 접수순서 순으로 발표

- 발표내용 : 신청서류 브리핑 및 운영의지, 비전 제시 등

- 발표시간 :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다.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계	법인(단체)의 적격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상태 및 경영능력	관련사업 추진실적
100	30	40	20	10

- 신청 법인(단체)이 제출한 자료와 사업계획 발표 자료(질의응답 포함)를 평가하여 채점
- 심사항목은 다른 심사항목과 연관하지 않고 독립 평가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심사항목의 점수 영점 처리
- 각 신청 법인(단체)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단,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다수의 법인(단체)이 신청하였다도 적격자심사위원회 최종 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획득한 법인(단체)이 없을 경우에는 적격 법인(단체)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 공모
- 동점자가 있을 경우 아래 평가 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  
\* 사업계획의 적정성, 법인(단체)의 적격성, 재정상태 및 경영능력, 관련사업 추진실적 순
- 재공모 시 신청법인(단체)이 단독 응모일 경우, 1개 법인(단체)에 대해서 심사하고 심사 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법인(단체)로 선정

## 11. 선정결과 통보

가. 선정단체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2019. 11. 26.(화)

나. 위수탁 협약 체결 : 2019. 12. 13.(금) 한

※ 상기 일정은 재공고, 내부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12. 기타사항

가. 현장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관계규정·현지역건 등 미숙지 또는 관련 자료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다도 선정을 무효로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협약 체결을 하지 않을 시에는 수탁자 선정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최종 평가 점수 70점 이상자 중 차순위자와 별도 위수탁협약 체결 할 수 있음.

라. 협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문학시어터 운영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 포함된 협약 내용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청 문화예술과(☎032-440-40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인천광역시 문학시어터 민간위탁 법인(단체) 공모 참가신청 서류 1부. 끝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834호

## 시립체육시설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9조 규정에 따라 시립체육시설 위탁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인천광역시장

### 1. 위탁시설

시설명	위 치	규 모	주요시설
문학박대환 수영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	·부지 18,600㎡ ·건축연면적 18,193㎡ * 지하1층, 지상3층	· 경영풀 (10레인/50m) · 다이빙풀 (수심 5m) · 경영연습풀 (6레인/50m) · 관람석 (3,006석)

### 2. 위탁사무 범위

- 가. 경기장 부지내 경기시설, 편의·부대시설, 토지 등 일체 관리·운영
- 나.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목적에 반하지 않는 수익사업
- 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운영개선을 통한 시민만족도 증대
- 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3. 위탁기간 및 위탁금

- 가. 위탁기간 : 2020. 1. 1.~ 2022.12.31. (3년간, 1회에 한하여 갱신가능)
- 나. 위탁금 : 3,913,874,090원/년
  - ※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
  - ※ 최종금액은 예산편성액 및 협상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4. 응모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체육관련 법인·단체·개인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  
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자  
※ 수영장업 신고를 받았거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영장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 공동수급(컨소시엄)은 허용하지 않음

#### 5. 입찰서,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접수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가. 접수일시 : 2019. 11. 21.(목) 09:00 ~18:00  
나.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 사무실(담당자 : 민헌기)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라.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1) 접수기간의 마감시간까지 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 (위임장 소지)이 직접 제출
  - 2) 제출하는 서류 일체(사본 포함)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
  - 3) 입찰서 제출자는 필히 신분증 지참
  - 4)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뒤에 별첨으로 붙여 제출
  - 5) 제출된 서류 및 제안 내용에 위·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6. 수탁기관 선정 및 발표 : 협상에 의한 계약

- 가. 선정방법 : 「인천광역시 관리위탁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 결정  
※ 개최일시 및 장소(예정) : 2019. 11. 28.(목) 14:00 인천시청 중회의실  
나. 선정기준
- ① 수탁기관의 적격성, 사업수행능력
  - ② 수탁기관의 운영계획서, 지역사회 내 공공성 확보 등
- 다.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수탁사업 제안설명, 평가위원과의 질의·응답
- ① 제안설명(프레젠테이션)은 사업 책임자(개인, 법인·단체대표 또는 법인·단체 대표가 위임한 자)가 설명

- ② 발표순서는 업체명 가나다 순으로 하며, 발표시간은 10분, 질의·응답 10분  
 ※ 불참시는 서면심사로 진행
- ③ 정성평가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값으로 평가하며, 평가점수에 정량적 평가점수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 최고 득점한 응모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 ④ 제안서의 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평가 30점, 정성평가 6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  
 ※ 협상적격자(70점 이상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 ⑤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항목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서류보완 없이 그 평가항목에 한해 0점 처리함
- ⑥ 최고 득점한 응모자가 2 이상일 경우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투표로 최다 득표한 응모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 ⑦ 우선순위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협상 진행 후 위·수탁 협약 체결
- ⑧ 우선 협상 대상자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 진행 후 협약 체결

라. 선정자(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 ① 일 시 : 2019. 11. 29.(금).  
 ② 방 법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 7. 위탁 조건 (※세부사항은 위·수탁 협약에 따름)

- 가. 시설운영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나. 사용료·이용료, 임대수익 등은 “인천광역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며, 그 사용료·이용료, 임대수익 등을 우리시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 다. 위탁금은 공고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수탁자의 제안금액으로 하되, 수지율 변동 범위내에서 익년도 위탁금을 가감할 수 있다.

- 라. 물가 상승, 인건비 인상, 대규모 수선공사 등 불가피하여 우리시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마. 우리시가 지원하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다음연도에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이자와 같이 우리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 바. 시설물 유지관리시 시설 주요 구조부 개·보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이상)는 인천시, 단순 소모성 개·보수(수선)는 수탁자가 시행한다.
- 사. 수탁자는 위탁자의 관리감독, 회계감사, 종합성과평가 등에 응하여야하고, 그 결과를 위탁업무 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위탁이 취소 될 수 있다.
- 아. 수탁자는 기존 수탁자인 인천광역시체육회와 체결되어 있는 대관사항 및 임대 사업자들간 계약사항을 승계하고,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
- 자. 수탁자 변경시 기존 경기장 운영인력은 새로운 수탁자가 고용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차. 시립체육시설운영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및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위·수탁 협약을 위반한 때,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위·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타. 기타 이외 사항은 위·수탁협약서로 정함.

## 8.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안서 제출 : 직접방문 제출(우편제출 불가)

※ 접수처 : 인천광역시청 체육진흥과 사무실

나. 제안서 작성·제출 유의사항

- 1) 접수기간의 마감시간까지 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 (위임장 소지)이 직접 제출
- 2) 제출하는 서류 일체(사본 포함)에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
- 3) 입찰서 제출자는 필히 신분증 지참
- 4)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뒤에 별첨으로 붙여 제출

- 5) 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6) 제출된 서류 및 제안 내용에 위·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입찰보증금은 위탁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며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같음)
-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음

## 10. 입찰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규정을 준용한다

## 11. 위탁 운영자 준수사항 및 행정사항

- 가. 경기장 권리이전 행위의 금지

- ① 수탁업체로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된 경기장을 제3자에게 이전·양도, 전매, 전대 등 일체의 권리수수를 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다.
- ② 위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 나. 계약해지 사항

- ① 수탁업체로 선정된 운영사업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시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권리주장을 할 수 없고 이로 인한 투자비보상, 손해보상, 생계보상 등 어떠한 보상도 인천광역시에 요구할 수 없다.
  - 운영사업자 귀책사유로 의해 인천광역시의 위·수탁계약 해지가 있을 경우
  - 행정관청의 행정처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법령 및 인천광역시 조례 등의 제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

다. 시설물 설치 시 사전 승인

- ① 영구시설물을 축조 할 수 없음
- ② 체육시설 내·외부 인테리어, 시설물 설치 시 사전협의 및 승인절차를 득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 시 발생하는 민원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관리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12. 기타사항

-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요청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18.01.0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등 관계법규를 적용
- 나.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의 지적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우리시에 영구 귀속
- 다. 본 사업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우리시의 지시에 따라야 함
-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마.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바. 관련규정, 현지여건 등은 입찰자가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요건에 맞지 않는 사유 등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으므로, 공모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준수하여야 함
-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체육진흥과 (담당자 민현기, ☎032-440-4322)로 문의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836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 11. 4.

## 인 천 광 역 시 장

변경 등록사항 : 대표자 변경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단체명칭	변경사항			주된 사업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2000-0- 인천광역시사-42호 (2000. 5. 24.)	사단법인 실업극복 인천본부	대표자	김 병 상	양 재 덕	○ 실직자 생계지원 ○ 민간사회안전망 구축 및 취업 알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838호

##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인천광역시장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제320369호	주식회사 지우넷 김 영 두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천로 112, 6층 602호(부개동, 성덕빌딩)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839호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행정처분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제4항의 등록기준 미달 및 등록기준 미신고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 인 천 광 역 시 장

1. 행정처분일 : 2019. 10. 31.
2. 행정처분대상 및 내용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소	행정처분 원인	행정처분내용
7	경인해운항공(주)	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599,4층(주안동)	등록기준미달(보험갱신) (보험만료일:2019.4.9.)	2차우반 (사업정지 30일)
324	(주)글로지스	김**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296번길 98-11(운서동)	등록기준미달(보험갱신) (보험만료일:2019.4.15.)	2차우반 (사업정지 30일)
393	(주)람해운항공	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29번길16, 105동701호 (용현동, 인천용현역슬루타워)	등록기준미달(보험갱신) (보험만료일:2019.1.13.)	2차우반 (사업정지 30일)
396	영우로지스틱(주)	이**	인천광역시 동구 봉수대로98,비동223호 (송림동, 송림공구상가)	등록기준미달(보험갱신) (보험만료일:2019.2.3.)	2차우반 (사업정지 30일)
432	(주)퍼펙트해운(P.O.T)	박*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해대로136, 케이티연수지점별관2층(옥련동)	등록기준미달(보험갱신) (보험만료일:2018.10.9.)	2차우반 (사업정지 30일)
439	(주)세원물류	김**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496번안길 16(경서동)	등록기준미달(보험갱신) (보험만료일:2018.11.30.)	2차우반 (사업정지 30일)
507	(주)다원글로벌	진**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23,13동305호(송림동, 인천산업용품 유통단지)	등록기준미달(보험갱신) (보험만료일:2018.11.6.) 등록기준신고 (신고한:2019.1.12.)	2차우반 (사업정지 30일)
520	한국자원물류(주)	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북로11번길 20,506호(용현동)	등록기준신고 (신고한:2019.3.14.)	2차우반 (사업정지 30일)
658	(주)코스모로지스틱스	박**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252, 201동 2008호(청라동, 청라롯데캐슬)	등록기준미달(보험갱신) (보험만료일:2019.3.20.)	2차우반 (사업정지 30일)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등록기준 미신고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이하가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미달

###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

## 5. 유의사항

- 행정처분 대상업체는 등록기준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 11. 30.까지 보완조치가 없을 시에는 3차 위반 사업정지 60일의 행정처분을 할 것입니다.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해양항만과(032-440-4843)로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85호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 인천광역시장

###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17조의 규정은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소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상위 법률과 상충되어 같은 조에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연계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동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7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아동청소년과, ☎ 032-440-28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2) 연락처 : ☎ 032-440-2854, FAX 440-8691

3) 전자우편 : petals34@korea.kr

####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3.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4.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사업협조) ① (생략) ② (생략) <u>&lt;신설&gt;</u></p>	<p>제17조(사업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li> <li>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li> <li>3.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li> <li>4.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li> </ol>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p>관계 법령</p>	<p>□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학교밖청소년법)</p> <p>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                  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                  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                  야 한다.</p> <p>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                  장"이라 한다)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                  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                  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개                  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                  목, 보유·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                  "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                  보동의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li> <li>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li> <li>3.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li> <li>4.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li> </ol>
<p>관련 법규 정비 대상</p>	<p>“해당 사항 없음”</p>
<p>특이 사항</p>	<p>“해당 사항 없음”</p>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86호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 인천광역시장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원가 이하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적자가 발생하여 하수도사업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 거주 다자녀(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 20% 감면함
- 나. 업종별로 사용료·사용량 비중에 따라 사용구간을 조정하고 기준 단가를 차등 적용하며, 하수도사용료를 3년간 연평균 10% 인상함.

#### 3. 자치법규안 : 별첨

####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참조 : 하수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3618, 팩스 : 032-440-86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제21조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제12조제2항)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하수도사용료 등 감면기준(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하수도 사용료의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다음 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납분에 대하여는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제12조제2항)

##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사용요율			
	사용구분 (m <sup>3</sup> /월)	m <sup>3</sup> 당 단가(원)		
		2020년	2021년	2022년
가 정 용	1~10	350	380	410
	11~20	560	610	670
	21이상	860	940	1,030
업 무 용	1~50	490	530	580
	51~100	510	560	610
	101~300	1,050	1,150	1,260
	301~500	1,100	1,210	1,330
	501~1000	1,130	1,240	1,360
	1001이상	1,160	1,270	1,390
영 업 용	1~50	830	910	1,000
	51~100	860	940	1,030
	101~300	1,720	1,890	2,070
	301~500	1,800	1,980	2,170
	501~1000	1,850	2,030	2,230
	1001이상	1,900	2,090	2,290
육 탕 용	1~1000	430	450	470
	1001~3000	720	750	780
	3001이상	1,080	1,130	1,180
산 업 용	1m <sup>3</sup>	640	700	770

※ 비고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 [별표 4]

하수도사용료 등 감면기준(제21조제1항 및 제2항)

구 분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감면비율
하수도 사용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100%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20%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 하는 자	20%
	5.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신설>	20%
원인자 부담금	1. 건축면적에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에 해당하는 빗물 저류조를 설치한 자	해당 필지(대지)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제외
	2. 개발사업 면적의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을 저류공간으로 확보한 저류시설을 설치한 자	100%

- ※ 비고
1. 하수도사용료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2.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액 = 공공하수도 사용료 - 감면액(공공하수도 사용료×감면기준)
  3. 원인자부담금 감면비율은 제19조제4항에 대한 부분만을 말함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u></p> <p>제21조(감면 등)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7. 그 밖에 관리청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p> <p>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감면 기준은 별표4와 같다.</p> <p>③ (생략)</p>	<p><u>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u></p> <p>제21조(감면 등) ①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u></p> <p>8. 그 밖에 관리청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p> <p>② -----제7호까지의 ----- -----.</p> <p>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b>[별표1]</b>  <b>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b>                      (제12조제2항)</p> <p>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 업종</th> <th colspan="2">사 용 요 율</th> </tr> <tr> <th>사용구분 (m<sup>3</sup>/월)</th> <th>m<sup>3</sup>당 단가 (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가 정 용</td> <td>1~10</td> <td>320</td> </tr> <tr> <td>11~20</td> <td>510</td> </tr> <tr> <td>21~30</td> <td>560</td> </tr> <tr> <td>31~40</td> <td>750</td> </tr> <tr> <td>41~50</td> <td>860</td> </tr> <tr> <td>51이상</td> <td>1,470</td> </tr> <tr> <td rowspan="2">업 무 용</td> <td>1~100</td> <td>470</td> </tr> <tr> <td>101이상</td> <td>960</td> </tr> <tr> <td rowspan="2">영 업 용</td> <td>1~100</td> <td>790</td> </tr> <tr> <td>101이상</td> <td>1,570</td> </tr> <tr> <td rowspan="3">욕 탕 용</td> <td>1~1000</td> <td>410</td> </tr> <tr> <td>1001~3000</td> <td>690</td> </tr> <tr> <td>3001이상</td> <td>1,030</td> </tr> <tr> <td>산 업 용</td> <td>1m<sup>3</sup></td> <td>590</td> </tr> </tbody> </table> <p>※ 비고 :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 요율을 적용함.</p>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m <sup>3</sup> /월)	m <sup>3</sup> 당 단가 (원)	가 정 용	1~10	320	11~20	510	21~30	560	31~40	750	41~50	860	51이상	1,470	업 무 용	1~100	470	101이상	960	영 업 용	1~100	790	101이상	1,570	욕 탕 용	1~1000	410	1001~3000	690	3001이상	1,030	산 업 용	1m <sup>3</sup>	590	<p><b>[별표1]</b>  <b>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b>                      (제12조제2항)</p> <p>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3">구분 업종</th> <th colspan="4">사 용 요 율</th> </tr> <tr> <th rowspan="2">사용구분 (m<sup>3</sup>/월)</th> <th colspan="3">m<sup>3</sup>당 단가(원)</th> </tr> <tr> <th>2020년</th> <th>2021년</th> <th>2022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가정용</td> <td>1~10</td> <td>350</td> <td>380</td> <td>410</td> </tr> <tr> <td>11~20</td> <td>560</td> <td>610</td> <td>670</td> </tr> <tr> <td>21이상</td> <td>860</td> <td>940</td> <td>1,030</td> </tr> <tr> <td rowspan="6">업무용</td> <td>1~50</td> <td>490</td> <td>530</td> <td>580</td> </tr> <tr> <td>51~100</td> <td>510</td> <td>560</td> <td>610</td> </tr> <tr> <td>101~300</td> <td>1,010</td> <td>1,150</td> <td>1,260</td> </tr> <tr> <td>301~500</td> <td>1,100</td> <td>1,210</td> <td>1,330</td> </tr> <tr> <td>501~1000</td> <td>1,130</td> <td>1,240</td> <td>1,360</td> </tr> <tr> <td>1001이상</td> <td>1,160</td> <td>1,270</td> <td>1,390</td> </tr> <tr> <td rowspan="6">영업용</td> <td>1~50</td> <td>830</td> <td>910</td> <td>1,000</td> </tr> <tr> <td>51~100</td> <td>860</td> <td>940</td> <td>1,030</td> </tr> <tr> <td>101~300</td> <td>1,720</td> <td>1,890</td> <td>2,070</td> </tr> <tr> <td>301~500</td> <td>1,800</td> <td>1,980</td> <td>2,170</td> </tr> <tr> <td>501~1000</td> <td>1,850</td> <td>2,030</td> <td>2,230</td> </tr> <tr> <td>1001이상</td> <td>1,900</td> <td>2,090</td> <td>2,290</td> </tr> <tr> <td rowspan="3">욕탕용</td> <td>1~1000</td> <td>430</td> <td>450</td> <td>470</td> </tr> <tr> <td>1001~3000</td> <td>720</td> <td>750</td> <td>780</td> </tr> <tr> <td>3001이상</td> <td>1,080</td> <td>1,130</td> <td>1,180</td> </tr> <tr> <td>산업용</td> <td>1m<sup>3</sup></td> <td>640</td> <td>700</td> <td>770</td> </tr> </tbody> </table> <p>※ 비고 :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 요율을 적용함.</p>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m <sup>3</sup> /월)	m <sup>3</sup> 당 단가(원)			2020년	2021년	2022년	가정용	1~10	350	380	410	11~20	560	610	670	21이상	860	940	1,030	업무용	1~50	490	530	580	51~100	510	560	610	101~300	1,010	1,150	1,260	301~500	1,100	1,210	1,330	501~1000	1,130	1,240	1,360	1001이상	1,160	1,270	1,390	영업용	1~50	830	910	1,000	51~100	860	940	1,030	101~300	1,720	1,890	2,070	301~500	1,800	1,980	2,170	501~1000	1,850	2,030	2,230	1001이상	1,900	2,090	2,290	욕탕용	1~1000	430	450	470	1001~3000	720	750	780	3001이상	1,080	1,130	1,180	산업용	1m <sup>3</sup>	640	700	770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m <sup>3</sup> /월)	m <sup>3</sup> 당 단가 (원)																																																																																																																																		
가 정 용	1~10	320																																																																																																																																		
	11~20	510																																																																																																																																		
	21~30	560																																																																																																																																		
	31~40	750																																																																																																																																		
	41~50	860																																																																																																																																		
	51이상	1,470																																																																																																																																		
업 무 용	1~100	470																																																																																																																																		
	101이상	960																																																																																																																																		
영 업 용	1~100	790																																																																																																																																		
	101이상	1,570																																																																																																																																		
욕 탕 용	1~1000	410																																																																																																																																		
	1001~3000	690																																																																																																																																		
	3001이상	1,030																																																																																																																																		
산 업 용	1m <sup>3</sup>	590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m <sup>3</sup> /월)	m <sup>3</sup> 당 단가(원)																																																																																																																																		
		2020년	2021년	2022년																																																																																																																																
가정용	1~10	350	380	410																																																																																																																																
	11~20	560	610	670																																																																																																																																
	21이상	860	940	1,030																																																																																																																																
업무용	1~50	490	530	580																																																																																																																																
	51~100	510	560	610																																																																																																																																
	101~300	1,010	1,150	1,260																																																																																																																																
	301~500	1,100	1,210	1,330																																																																																																																																
	501~1000	1,130	1,240	1,360																																																																																																																																
	1001이상	1,160	1,270	1,390																																																																																																																																
영업용	1~50	830	910	1,000																																																																																																																																
	51~100	860	940	1,030																																																																																																																																
	101~300	1,720	1,890	2,070																																																																																																																																
	301~500	1,800	1,980	2,170																																																																																																																																
	501~1000	1,850	2,030	2,230																																																																																																																																
	1001이상	1,900	2,090	2,290																																																																																																																																
욕탕용	1~1000	430	450	470																																																																																																																																
	1001~3000	720	750	780																																																																																																																																
	3001이상	1,080	1,130	1,180																																																																																																																																
산업용	1m <sup>3</sup>	640	700	770																																																																																																																																

현 행	개 정 안																																				
<p><b>[별표4]</b> <b>하수도사용료 등 감면기준</b> (제21조제1항 및 제2항)</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10%;">구분</th> <th style="width:60%;">감면대상 및 감면기준</th> <th style="width:30%;">감면비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하수도 사용료</td> <td>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가정용 10세제곱 미터에 해당하는 요금</td> </tr> <tr> <td>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r> <tr> <td>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원인자 부담금</td> <td>1. 건축면적에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에 해당하는 빗물 저류조를 설치한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해당 필지(대지)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산정 제외</td> </tr> <tr> <td>2. 개발사업 면적의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을 저류공간으로 확보한 저류시설을 설치한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r> </tbody> </table> <p>※ 비고 1. 하수도사용료 감면비율은 고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p> <p>2.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액 = 공공하수도 사용료 - 감면액(공공하수도 사용료×감면기준)</p> <p>3. 원인자부담금 감면비율은 제19조제4항에 대한 부분만을 말함</p>	구분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감면비율	하수도 사용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가정용 10세제곱 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100%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20%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20%	원인자 부담금	1. 건축면적에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에 해당하는 빗물 저류조를 설치한 자	해당 필지(대지)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산정 제외	2. 개발사업 면적의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을 저류공간으로 확보한 저류시설을 설치한 자	100%	<p><b>[별표4]</b> <b>하수도사용료 등 감면기준</b> (제21조제1항 및 제2항)</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10%;">구분</th> <th style="width:60%;">감면대상 및 감면기준</th> <th style="width:30%;">감면비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하수도 사용료</td> <td>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가정용 10세제곱 미터에 해당하는 요금</td> </tr> <tr> <td>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r> <tr> <td>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5.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원인자 부담금</td> <td>1. 건축면적에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에 해당하는 빗물 저류조를 설치한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해당 필지(대지)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산정 제외</td> </tr> <tr> <td>2. 개발사업 면적의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을 저류공간으로 확보한 저류시설을 설치한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r> </tbody> </table> <p>※ 비고 1. 하수도사용료 감면비율은 고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p> <p>2.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액 = 공공하수도 사용료 - 감면액(공공하수도 사용료×감면기준)</p> <p>3. 원인자부담금 감면비율은 제19조제4항에 대한 부분만을 말함</p>	구분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감면비율	하수도 사용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가정용 10세제곱 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100%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20%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20%	5.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20%	원인자 부담금	1. 건축면적에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에 해당하는 빗물 저류조를 설치한 자	해당 필지(대지)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산정 제외	2. 개발사업 면적의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을 저류공간으로 확보한 저류시설을 설치한 자	100%
구분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감면비율																																			
하수도 사용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가정용 10세제곱 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100%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20%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20%																																			
원인자 부담금	1. 건축면적에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에 해당하는 빗물 저류조를 설치한 자	해당 필지(대지)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산정 제외																																			
	2. 개발사업 면적의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을 저류공간으로 확보한 저류시설을 설치한 자	100%																																			
구분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감면비율																																			
하수도 사용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가정용 10세제곱 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100%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20%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20%																																			
	5.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20%																																			
원인자 부담금	1. 건축면적에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에 해당하는 빗물 저류조를 설치한 자	해당 필지(대지)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산정 제외																																			
	2. 개발사업 면적의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을 저류공간으로 확보한 저류시설을 설치한 자	100%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p>□ 하수도법</p> <p>○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일부를 인상하는 사항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 4. 작성자 : 환경국 하수과장 서용성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9-294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교육감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개정이유

- 가. 병설·통합운영·부설학교 소속 지방공무원 등의 겸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 지방공무원의 능력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한 다면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개정근거

- 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겸임)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시행규칙) 및 제7조의5(겸임)
- 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4(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 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겸임수당)

### 3. 주요내용

- 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에 따라 병설·통합운영·부설학교 소속 지방공무원 등에 대한 겸임발령 및 겸임수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2)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4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능력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해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하급 공무원 및 동료 공무원이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0조)

### 4. 의견제출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1)를 인천광역시교육감(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law.ice.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4) 보내실 곳
  - 주소: (우편번호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
  - ※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 전화 및 팩스: 전화) 032-420-6511팩스) 032-420-6536
  - E-mail: [hhelibe@ice.go.kr](mailto:hhelibe@ice.go.kr)

### 5.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 1

### 6. 개정규칙안: 붙임 2



< 붙임 2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겸임발령 및 겸임수당)** ① 교육감은 영 제7조의5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9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5조·제30조·제51조에 따른 병설·통합운영·부설하는 학교 소속 공무원이 업무분장을 통해 병설·통합운영·부설되는 유치원 또는 학교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겸임발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겸임발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30조(다면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교육감은 영 제8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하급 공무원 및 동료 공무원 등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교육감은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청렴도 등이 포함된 평가영역별 문항을 정하여 평가단에게 제공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임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p>제18조의2(겸임발령 및 겸임수당)</p> <p>① 교육감은 영 제7조의5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9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5조·제30조·제51조에 따른 병설·통합운영·부설하는 학교 소속 공무원이 업무분장을 통해 병설·통합운영·부설되는 유치원 또는 학교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겸임발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② 제1항의 겸임발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의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p>
<신 설>	<p>제30조(다면평가의 실시 및 활용)</p> <p>① 교육감은 영 제8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p>

현행	개정안
	<p><u>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u></p> <p><u>② 다면평가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하급 공무원 및 동료 공무원 등 30명 이내로 구성한다.</u></p> <p><u>③ 교육감은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청렴도 등이 포함된 평가영역별 문항을 정하여 평가단에게 제공한다.</u></p>

##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발취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법**

- 제30조(겸임)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4조(시행규칙)
- 제7조의5(겸임)
- 제8조의4(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제31조(겸임수당)

## 관계법령 발췌

### 1.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5801호, 2018. 10. 16.】

제30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 특수전문 분야의 일반직공무원,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2. 지방공무원 임용령

【법률 제29869호, 2019. 6. 18.】

제4조(시행규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정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 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5(겸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1.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3.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일반직공무원 간
2.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3. 일반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 간
4.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③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겸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겸임하게 할 때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서 임용하여야 한다.

**제8조의4(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면평가의 결과(총점 및 분야별 평가점수에 한정한다)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 관련자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겸임수당) ① 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자에게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사립의 전문대학, 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의장이 정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9-295호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교육감

##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1. 개정이유

- 가.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하는 조문을 단순화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1513호, 2013. 12. 12. 시행)으로 종전 기능직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 및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고 기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개정근거

-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 3. 주요내용

가.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함

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 시 준용 조문을 개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당 조문의 내용을 단순화함 (안 제5조제2항)

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으로 종전의 기능직공무원이 폐지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관련 조항 및 내용을 삭제함(안 제7조제2항)

### 4. 의견제출

본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1)를 인천광역시교육감(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law.ice.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4) 보내실 곳

- 주소: (우편번호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

※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 전화 및 팩스: 전화) 032-420-6511팩스) 032-420-6536

- E-mail: [hhelibe@ice.go.kr](mailto:hhelibe@ice.go.kr)

### 5.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 1

### 6. 개정규칙안: 붙임 2

&lt; 붙임 1 &gt;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민원인 인적 사항	성명		단체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 붙임 2 >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심사방법, 그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 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수당지급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소속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소속 교육장이 그 신청기간까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교육감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은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서 정한 산정방법을 따른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여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 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 수당지급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교육감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등 명예 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수령권은 유족 또는 상속인에게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인원, 신청기간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까지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소속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소속 교육장이 그 신청기간까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교육감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은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위 직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해당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 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① 소 속		② 공무원의 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③ 직급 (호봉)	( 호 봉 )
④ 성 명	(한글)	⑤주민등록번호			
	(한자)	⑥주 소			
⑦전 화 번 호 (자택)		⑧근 속 기 간	년 월	⑨정년일	년 월 일
⑩정 년 구 분	<input type="checkbox"/> 연령정년 <input type="checkbox"/> 계급정년		⑪ 수 당 청구액		
⑫정년 잔여기간 (지급대상기간)	년 월		⑬산출내역		
<p>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 확인) 1부.  2. 연금업무지원시스템 재직자 정보 출력물(원본대조 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4. 서약서 1부.  5. 명예퇴직 대상자 요건 심사서 1부.  6. 공적조서(특별승진 희망자에 한함) 1부.</p> <p style="text-align: right;">20 . . . . . 신청인 (인)</p>					
⑭확인	인사담당	(인)	연금담당	(인)	
<p>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 . . . . (소속기관의 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p>					

주)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 작성요령

1. ⑧은 「공무원연금법」 상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공고된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2. ⑩은 해당란에 V표시함.
3. ⑫는 공고된 명예퇴직 예정일로부터 정년 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 단위 이하 잔여기간이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4. ⑩, ⑪, ⑫, ⑬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자 또는 연금담당자가 직접 기재함.
5. ⑬은 ⑪의 산출근거를 기재함
6. ⑭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하되,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소 속:

직 급:

성 명:

상기 본인은 사유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고자 하  
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위원인 (인)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① 소 속		② 공무원의 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③ 직급 (호봉)	(      급 호봉)
④ 성 명	(한글)	⑤ 주민등록번호			
	(한자)	⑥ 주 소			
⑦ 전 화 번 호 (자택)		⑧ 근 속 기 간	년 월	⑨ 최초임용일	년 월 일
⑩ 수 당 청구액			⑪ 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 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3. 서약서 1부.

20 . . . .

신청인 (인)

⑫ 확인	인사담당	(인)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

(소속기관의 장)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주)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반드시 인사담당자가 기재한다.

작 성 요 령

1. ⑧은 조기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2. ⑧, ⑨, ⑩, ⑪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자 또는 연금담당자가 직접 기재함.
3. ⑪은 ⑩의 산출근거를 기재함
4. ⑫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하되,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별지 제4호서식]

조 기 퇴 직 원

소 속:

직 급:

성 명:

상기 본인은 사유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고자 하  
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위원인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발취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input type="checkbox"/> <b>지방공무원법</b><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2조(공무원의 구분)</li></ul></li> <li><input type="checkbox"/> <b>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b></li></ul>
-------------------	--

## 관계법령 발취

【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4. 삭제 <2011. 5. 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항제2호, 제46조제3항 및 제4항,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9869호, 2019. 6. 18.】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4. 삭제 <2011. 5. 23.>
-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2.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대통령령 제29181호】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 등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 지급한다.

## 군 · 구

인천광역시용진군고시 제2019-139호

## 대 · 소이작항 어촌뉴딜300사업 사업계획 고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 · 소이작항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하여 『어촌 · 어항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1. 4.

### 용진군수

1. 사업의 명칭 : 대 · 소이작항 어촌뉴딜300사업
2. 사업의 목적
  - 어항시설 노후화 및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어항 인프라 구축 필요
  - 지역개발수요 증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정비필요
  - 대 · 소이작항 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주민소득 증진 및 지역 어촌 개발 도모
3. 사업비 소요액 : 10,682백만원(국비 7,478, 지방비 3,204)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가. 사업의 내용
    - 공통사업 : 대이작항 방파제 연장, 대이작항 호안정비(공유수면 매립), 소이작항 호안정비(공유수면 매립), 소야리항 선착장 및 물양장 정비
    - 특화사업 : 풀등 해상탐방로 조성, 어류 생태체험장 조성
    - S/W사업 : 역량강화 교육 및 선진지견학 실시, 주민 소득사업 발굴 등 1식
  - 나. 사업의 구역 : 인천광역시 지월면 이작리(대·소이작항), 덕적면 소야리(소야리항) 일원

5. 사업예정기간 : 2019년 ~ 2021년(3년간)

6. 사업의 효과

- 어업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어민 불편해소 및 태풍 등 재난피해 사전 예방은 물론 주민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주차시설 확장을 통한 주민·관광객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
- 풀등해상탐방로 및 어류 생태체험장 조성 등으로 대소이작하만의 차별화된 관광시설물 구축

7. 사업시행자 : 용진군수

8.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해당 없음

9. 기 타

- 기본계획서는 용진군청 해양시설과에 비치되어 있어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기 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345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굴포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246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238-1번지
  - 면 적 : 6.76m<sup>2</sup>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강관전주 설치
  - 내 역 : 강관전주(H=18m) 1본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9.10.30.~2024.06.30.(2019.10.30.~2019.12.31.)

인천청선학교공고 제2019-49호

## 공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7조 및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 및 폐기한 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28.

### 인천청선학교장

1. 공인 재등록 및 폐기사유 : 공인 오기 사용에 따른 재등록 및 폐기
2. 공인의 폐기연월일 : 2019년 10월 28일
3. 공인의 최초사용일 : 2019년 10월 28일
4. 재등록 및 폐기 공인명 및 인영

재등록 공인명			폐기 공인명		
공인명	규격	인영	공인명	규격	인영
인천청선 학교장인	2.4cm 정사각형		인천청선 학교장인	2.4cm 정사각형	